

북한의 인권실태



통 일 원

목 차

I. 머릿말	1
II. 국제적 인권보호규정	2
1. 유엔헌장	2
2. 세계인권선언	3
3. 국제인권규약	4
III.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6
1. 인권규정	6
2. 사례로 본 인권실태	12
가. 기본적 권리	12
나. 정치적 권리	32
다. 사회·경제적 권리	41
IV.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62
1.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62
2. 수용시설 및 생활상	65
3. 주요 수용인물	74
4. 정치범수용소의 주민구금 장소	75
【첨부】 1.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93-'94)	79
2. 북한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원회 발표('94. 7. 30)	110
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122
4. 휴전이후 남북·억류자 현황	136

I. 머릿말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도 받지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
-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시·통제체제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인권단체나 귀순자들이 증언하고 있음.
-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품위와 존엄성을 향유하는 평화통일의 구현이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우리 정부의 주요 과업중의 하나임.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자는
 - 인권관련 국제규약을 검토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추구되는 보편적인 기본권의 내용
 - 북한의 헌법·형법 등의 인권규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권실태
 - 국제인권단체보고서 및 귀순자의 증언에서 나타난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II. 국제 인권보호규정

국제인권보호 규정 중 대표적인 것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며 이들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개별국가들에 지침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구체적 실천 조치를 취하고 있음

1. 유엔헌장

- UN헌장은 인권에 관한 본격적인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국제연합이라는 범세계적 평화기구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 인류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한번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
 -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없는 인권존중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인정을 규정하고 [제55조]
 - 모든 가맹국에 이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음. [제56조]

2. 세계인권선언

- 1948년 유엔헌장의 인권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시도로서 유엔에 의해 선포된 동 선언은 인권을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로 구분하여
 - 『정치적·시민적 권리』로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종교·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 『경제적·사회적 권리』로는 교육권, 노동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예시하였음.

- 그러나 인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절대적인 『기본적 권리』와 상대적인 『2차적 권리』, 『추가적 권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기본적 권리』는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생명권, 신체의 자유,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권 등이며
 - 『2차적이며 추가적인 인권』들은 보장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본질적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인권으로 재산권, 언론·사상의 자유,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임.

3. 국제인권규약

- 국제인권선언의 선언적 원칙들을 구속력 있는 일반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6.12.16 유엔총회에서 두개의 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는 바
 - 동 규약은 헌장보다도 인권을 더욱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인권보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규약들은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각기 구상하고 있는데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각 당사국에서 보내온 보고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당사국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임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는 인권의 보호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일국의 경제가 일정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의 제도적 장치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단지 경제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써 일국에서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 『선택의정서』는 개인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인권위원회는 당해국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또한 권고하는 것 뿐임.
-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간의 조약으로 동 조약의 비준에 의해 국가는 조약에 포함된 조항을 존중하고 조약에 의해 요청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을 위하여 특정한 제소제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 결국 상기 인권관련 국제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 기초위에서
 - 인간에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물리적·정신적 외압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상태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과
 - 한편으로 자아실현의 완성을 위한 제반조건들의 성숙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주로 경제적·사회적 권리)등이 인권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해 주고 있음.

III.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1. 인권규정

- 북한에서의 법은 당 및 정권기관의 대주민통제의 강화 및 사적생활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공법화되어 있고 권리보다 의무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법의 제정 및 운용이 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음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헌법 제11조)로 명시, 노동당의 결정과 지시가 헌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그에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있음.
- 북한 헌법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는
 -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생활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 주로 무상치료권, 휴식권, 여자의 권리 등 사회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만 인정된다고 정의하고 있음.
- * 국민 :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조선말 대사전』, P.270)

- 특히 북한 헌법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조항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해방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하여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이 계층을 51부류로 더욱 세분화하여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은 양상을 띄고 있음

주민성분조사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집중지도사업	'58.12- '60.12	○ 적대군중으로 분류후 이들 가운데 6,000여명을 인민재판으로 처단하고, 약 7만명은 『내각결정 149호』에 따라 산간벽지로 추방
주민재등록사업	'66.4- '67.3	○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3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67-'70.6	○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72.2-'74	○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검열사업	'80.1- '80.12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 기능 강화

구 분	시 기	내 용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 '80.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81.1- '81.4	○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갱신사업	'83.11- '84.3	○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며 『인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정법인 형법은
 -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요소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로서
 - *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P.219)
 -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강한 정치 사상이 요구되므로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옹기 집행할 수 없습니다.』(김일성 저작집 제12권 P.222)
 - 이는 북한의 형법이 개인 및 사회의 법익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수단이 아닌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근거 및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북한형법 내용중 반인권적 성격 >

○ 유추해석의 인정

-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형법 제10조)
-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라는 근대형법의 대원칙에 반함.

○ 형벌조문의 추상성

-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 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랍용하여 엮중한 결과 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4조)
-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8조)
-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31조)
- *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결국 당의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마련

○ 예비와 미수의 처벌

-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15조)

* 범죄의 예비만으로도 확일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뿐아니라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문제로 삼아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인권침해의 위험 상존

○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

- 『이법 제63조(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한 강도죄), 제141조(살인죄), 제160조(공민에 대한 강도죄)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

*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범, 방임범의 예외없는 처벌 외에도 강도죄, 살인죄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 전체주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상호감시체제 구축 기도

○ 부당재판의 처벌

-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

* 삼권분립의 민주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법부의 정치종속의 극명한 표현이며 김부자 및 노동당의 전횡적 권력범위를 무제한화 하는 조항임.

○ 생산수단화된 개인

-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79조)

-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80조)

-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81조)

* 개인 권리보장보다는 사회주의체제 수호가 형법의 존재이유임을 시사

2. 사례로 본 인권실태

가. 기본적 권리

1) 자유권적 인권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불법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정도이나 북한은 공정한 재판절차없이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 등 비인간적 처벌을 자행하고 있으며
 - 특히 김일성부자의 지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시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인민재판식 『공개재판』을 실시,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음.
- 또한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주민들에 비해 가혹한데 이들은
 -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해 명확한 언급없이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입소날로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연락도 할 수 없는 처벌을 받고 있고
 - 수용자들은 구역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함.

< 주요 사례 >

- “ 1983년 1월이다. 김일성의 신년사 발표가 있어서 시청하던중 김일성의 목소리가 원소리 굵게 나자 ‘ 돼지 먹따는 소리처럼 짹짹 거린다 ’ 고 무심코 말 한마디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음날 소리없이 불려갔고 현재 그의 가족까지 추방당했다는데 이웃들은 그가 특수처리대에 의해 사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덕남, '90.9.7 귀순)
- “ '90.8 북청군 소재 북청사범대학생 명불 4명이 북청군 쌍림리 소재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2배낭(약 10kg)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황해도 출신 학생(33세가량)이 경비원 1명을 전지가위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91.4초 북청 사범대 뒷산에서 사범대학생, 주민 등 2,000여명이 관람하는 상태에서 공개총살형에 처한 사실이 있었음. ” (여금주, '94.2 귀순)
- '89. 9 평남 안주시 청천다리에서 협동농장원 고정갑이 강냉이 600Kg을 절취한 죄로 공개재판을 통해 공개총살을 당했는데 안전원 2명이 피고인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후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려 재판장 옆에 설치한 나무기둥에 결박한 후 사격수 3명 (도안전원)이 사형수 전방 10m 지점에서 자동보총으로 3발씩 사격하고 사격종료후 가마니 등으로 시체를 말아 구급차에 싣고 갔는데

총살형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큰 죄도 아닌데 아깝게 죽었다.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며 당국의 무자비한 법집행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함” (백영길, '94. 3. 11 귀순)

- “어떤 집에서는 장마철에 김일성 초상화에 습기가 차서 구김이 생겼다. 이 구김을 펴기 위해 초상화를 떼어내어 다리미로 펴다가 누렇게 퇴색되어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렸다. 이 모습이 정성검 열대에 발각되었다. 검열대 지도원이 ‘무엇때문에 수령님의 초상화 얼굴을 다리미로 지졌는가?’ 라고 추궁했다. 이 추궁에 ‘구김을 펴 보려는 충성심에서 그랬다’ 고 사실대로 답변했으나 결과는 사상체계를 걸어 시골로 추방되었다.” (임정희, '89.9.10 귀순)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북한헌법 제17조는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침입 등 주민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
- 북한은 당·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 등 3중 감시체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30여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5호담당 지도원도 각 세대의 사상동태,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음.
- 또한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군에서 다른 군 지역으로 여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여행증명서’를 발부받아야 여행할 수 있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 만약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경범죄 수용소인 ‘집결소’에 수용되어 30일간의 무보수 노동에 처해지기도 함.

< 주요사례 >

- 각 공장·기업소 및 리·동단위에는 보위부원과 사회안전부 요원을 주재시키고 유치원 보모들까지 정보원(밀정)으로 삼아 천진한 어린이를 이용하여 사생활까지 탐지하고 있는바, 주민에 대한 감시체계는
 - 5호담당제를 통해 5호담당 지도원이 각 세대의 사상동태, 일상생활을 감시
 - 30 - 60세대를 한개 인민반으로 묶어 인민반장이 행정업무처리 등과 주민동향을 파악, 매일 동 사무소에 보고
 - 사회안전부 분주소에서는 인민반장과 협조, 주민동향을 파악 일반범죄자 등을 색출, 소조 책임자가 시·군·구역 당위원회내 3대혁명 소조부에 보고
 - 각기관·기업소내에서는 당 세포비서가 각 개인을 감시, 총화 등을 통해 비판하고 초급당 비서에게 매일 직보
 - 국가보위부에서는 수개 직장단위별로 보위부원을 파견, 사상동향을 감시하며 반당·반체제 사범 색출활동을 하고 있음.

(김수행 '91.9.3 귀순)

- “1982년까지는 감시원 세 사람이 주민 한 사람을 감시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일곱 사람으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84년에 들어와서는 위생부 반장과 세대주 반장제를 신설하여 이들에게도 망원의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단위조직내의 망원수는 9명이 되었다. 감시의 중점은 보위부 요원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사회안전부 경제감찰지도원이 개인생활의 수입과 지출내용·관혼상제의 접대 낭비여부·고가 물건·TV·냉장고·이불장·전축 등의 구입내역을 감시토록하고 있다.

사회안전부 주민담당 지도원은 매년 개인생활평정서에 직계 및 친척에 대한 신변변동사항을 정리·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인민반장은 배급 수령후 혼합곡 사용여부와 식용유 과소모 여부·육류 구입·취식여부·인민반 공동회의 참가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인민반 경비원은 외래인 방문자와 각종 모임 유무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급당비서는 사상학습 참가여부와 각종 조직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책임자는 지각·조퇴횟수·업무수행상태·출장사유 및 지역파악·사적업무출장 및 퇴근여부·무단결근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반장은 김부자 출판물 보관 및 관리상태와 김부자 초상화 관리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주 반장은 남자위주의 사생활을 파악하면서 불량배 및 불순분자를 색출,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는 불규칙적으로 지역별로 임명된 담당자들이나 감시요원들이 직접 순회방문할 때 종합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위부 계통은 통상 야간에, 안전부 계통은 주간에 보고·연락토록 하고 있다. 감시중점사항에 위배되는 자는 1차 구두로 경고하고 있다. 그래도 또 위배할 때는 위배정도에 따라 엄중경고를 하고, 6-12개월 철직대우, 책벌로 5-10년간 직위해제, 제한구역으로 이주 추방, 정치범으로 수용, 통제구역에 종신거주 등의 엄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위배자를 색출 보고한 자는 기관의 신임을 얻어 일반적인 과오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보고자의 과오가 발생될 때는 일반인들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김광호, '87.3.3 귀순)

“평양시에 세돌 지난 아이를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그날도 평일과 같이 인민반장에게 찾아가 열쇠를 맡겼다. 그런데 그날 구역 당에서 유일사상검열성원이 내려와 인민반장과 함께 반내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도서를 검열하였다. 젊은 부부집에도 들어가 검열하였는데 책상 밑에서 로작 책뚜껑이 오줌에 젖어 맨 앞장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가 오손된 것이 발견되었다. 소변이 묻은 사유는 3살짜리 아이가 장난을 치며 책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오줌을 싸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른 부모는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별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인민반장에게 열쇠를 맡겼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들 부부는 철없는 아이의 소행이었지만 로작책 뚜껑에 오줌을 싸게해 오손시킨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깊은 산골로 추방되게 되어 앞날까지 영원히 망치게 되었다”

(고운기, '89. 8.12 귀순)

- “외부지역에서 온 사람이 숙박을 하려면 해당인민반 숙박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인민반장의 확인이 끝난후 분주소(파출소)에 찾아가 공민증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형제 친척 사이라도 무조건 숙박을 하다 검열에 적발되면 벌금과 증명서 특기란에 무단숙박자였다고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소영식 '88.9.24 귀순)

- “북한은 전국의 모든 난장이들을 자강도와 양강도 접경 고원지대에 집단 격리수용,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며 살게 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하고 있으며 맹인들도 도소재지 이상 대도시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마을을 조성, 집단 거주토록 하고 있고 특히 평양에는 병어리, 귀머거리 등까지 지방으로 전원 추방하였음.” (윤 응, '93.10.11 귀순)

· “북한은 평양주민을 200만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82년경 토대불량자, 불구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소개사업을 벌였으며 또한 평양은 외국인들이 왕래하는 북한의 관문으로서 일반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 일반주민들이 평양을 출입하려면 평양에 거주하는 친척 등의 사망전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갖고 군안전부에 신청하고, 또한 평양시 안전부에서 평양방문 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포기하며,

- 지방에서 평양을 가본 사람은 100명당 5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함”
(장기홍 '91.11.28 귀순)

·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부모는 즉시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통제때문에 장례날짜에 가지 못했다.

그 부모들은 ‘자식 잃은 것만도 원통한데 죽은 자식도 못보게 됐다’고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며 울다가 끝내는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하면서 대성통곡 하는 것을 보았다”

(소영식, '88.9.24 귀순)

3) 정신적 · 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

- 북한에서는 유일사상(주체사상)에 의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도 규제되고 있으며
 - 오로지 주민들은 김일성부자의 생각과 사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양심과 사고는 억제되고 있음.

- 또한 하나의 사상만이 존재하는 북한에서 종교는 헌법에 그 자유를 보장한다고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낱말에 불과하며
 - 북한의 사찰 · 교회 · 성당 등은 북한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설립된 종교시설이 아니라 해외관광객을 위한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임.

- 개성있는 창작작업으로서의 문학 · 예술활동은 북한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며 오로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만 존재가치가 있는 바
 -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예활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주요사례 >

- “북한의 최고법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 10대원칙은 모든 인민들이 김일성이 생각하고 의도하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 인민을 여러 형태로 조직에 편성시켜 놓고 생활의 일거일동을 주·월·분기·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총화(비판)를 실시함으로써 인간본능의 양심을 규제·통제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양심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곧 김일성에 대한 항명으로 매도되어 비판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정치범이 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종신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

(고운기, '89.8.12 귀순)

- “북에서는 오직 당과 김일성을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자의 품모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혁명적 양심을 강요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김일성·김정일이 바라고 의도하는대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후된 경제와 모순된 체제를 확인하는 순간마다 김일성 말과 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이 때문에 누가보지 않거나 당조직의 감시·통제를 벗어나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양심을 버리며 불법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소영식, '88.9.24 귀순)

-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는 국가 이익에 공헌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엄격히 제한한다. 최근에 북한정부는 외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조직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

북한은 500여곳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보는 1만여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며, 한국 토착종교운동에서 비롯된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인 천도교 청우당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그의 주체사상은 숭배되고 있으며 김일성 가족에 대한 찬양은 국가적 종교의 것에 가깝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주의” (북한 언론이 부르는)와 기독교사상을 융합시키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 '88.9 신축된 평양 만경대 구역 건국동소재 봉수교회는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면서 철문을 굳게 닫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여명이 위장 예배를 보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교회 인근 주민들은 봉수교회를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하고 있음. ” (김명철, '93.7.15 귀순)

- “함경남도 신포시의 한 마을에는 머리를 약간 흔들거리면서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해방직전에 무당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3명의 손녀가 40세가 넘었는데도 시집을 못가고 있었다. 이유는 10대원칙에 명시된대로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게다가 혁명적 신념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손녀들이 머리도 좋고 악기도 잘 다루는 재능을 가졌어도 결혼을 못한 것이다. 그 처녀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장래가 영원히 막히고 북한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성, '90.6.1 귀순)
- “북한의 예술은 그 소재나 주제도 김일성·김정일의 이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풍경을 그린 미술작품이라도 김일성·김정일의 사적물이 있는 고장이나 지역을 배경으로 그려야 당선될 수 있고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예를들면 만경대·백두산·백두산밀영지대 등은 김일성·김정일의 고향 및 활동지역의 표현으로 이용되며, ‘강선의 노을’이라는 그림의 소재는 저녁노을보다는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을 주제로 담고 있다. 서예작품도 김일성에 대한 글이나 반미·반제·반남사상을 선전하는 것이나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제공한 구호나 선전원고 외에는 임의로 쓸 수 없다.” (이정철, '93.9.23 귀순)

- “아마 1984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그때 해군이였다. 바닷가 초소에서 근무할 때 난생 처음으로 본 해당화꽃이 모래밭의 뜨거운 해풍 속에서도 곱게 피는 것을 보면서 시 한편을 썼다. 잘 쓰여진 시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조선인민군출판사로 올려보내려고 중대 정치지도원에게 그 시를 제출했다. 중대정치지도원은 그 시를 곧 상급정치부로 올려보냈다. 나는 그때까지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상급 정치부에서 온 소식은 나를 실망시켰다. 시의 주제가 당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며 사상성이 없는 시를 썼다고 비판까지 받았기 때문이었다.”

(김 성, '90.6.1 귀순)

4) 법앞에 평등

- 북한 헌법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모든 주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 실생활에 있어서는 엄격한 계층·신분별 차별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북한은 해방이후 몇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성분을 조사,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하여
 - 개인의 지위, 특권, 식량배급, 직업,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데까지 적용하고 있어 엄청난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음.

< 주요사례 >

- “김일성을 포함, 2백만명이 엘리트 특권계급이며 1천5백만명이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며 3백만명은 불순분자로 분류돼 일체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어린이 여러 명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가 속해있는 계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케리건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연구소 북한인권세미나 발표내용, 세계일보 ('92.5.22, 5면))

“당간부나 행정간부는 먹고 입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어도 노동자들처럼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직위에 따라 국가로부터 주택·가전제품·식료품 등의 일용품을 전용상점과 공급소에서 보장받고 있고 가족수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방 한 칸에 한 세대가 살림을 하는 것은 보통이며 남의 집에 임시로 방을 만들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보아도 북한이 무계급사회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소영식, '88.9.2 귀순)

- “특히 북한은 아직도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전쟁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집은 6·25때 월남하였다는 할아버지 때문에 부모도 고생했지만 형제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했다” (김 성, '90.6.1 귀순)

- “평안남도 재판소의 한 고위간부는 국가자금 착복·처녀강간·유부녀 강간 등의 죄로 사회적으로 여론이 나뻐으나 법을 다루는 기관요원이라 해서 10년 이상 중형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교화노동으로 재판해버린 사실이 있다. 또 평성시 행정위원회에서는 고위간부들의 국가자금 착복·부화

사건이 집단적으로 나타나 큰 문제거리가 되었으나 이 사건 역시 관대히 용서되어 지난 1983년 직위 철직만 되는 조치로 끝나고 말았다.” (김광호 '87.3.3. 귀순)

- “2·8 비날론 연합기업소의 설계기사로 있던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로 실험실에 화재를 냈다. 이 실수로 그는 당원자격과 당증을 박탈당하고 준박사 칭호도 무효화된 채 홍원군 관개건설사업소로 추방당했다. 그는 거기서도 먼저 근무하던 기업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도 하며 관개건설에 따른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관여를 했다. 이 사실을 안 2·8 비날론 기업소 초급당 비서가 ‘그만큼 과오를 저지르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려 기업소 일에 관여하는가? 더욱이 동무는 비당원이 아닌가?’ 하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대우를 하지 않았다. 당원이 아니면 발언권도 없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월급도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보다 적었다. 내가 70-80원을 받았는데 그는 두 딸과 부인을 거느린 세대주였는데도 60원을 받아 생활하였다.”

(김 성, '90.6.1 귀순)

- “한살짜리 아기를 둔 젊은 농장원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해뜨기 전에 들에 나가 해가 지면 돌아오는데, 아이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 예외되는 경우는 드물다. 남편 혼자 벌어들인 공수로 연분배를 받아 살아가자면 고충이 많으므로 이들 부부는 아침 여섯시 경에 아기를 탁아소에 맡기고 함께 농장으로

출근한다. 오전 열시쯤이면 탁아소 보육원들이 업고 오는 아기에게 30분 정도 젖을 먹인다. 남자들은 이 시간에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아기엄마들은 휴식하면서 젖을 먹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남성들처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제한된 휴식시간이 종료되면 지도원이 ‘작업시작’이라고 외치는데 아기엄마들은 이때 아기가 빨고 있던 젓꼭지를 강제로 떼어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퇴근후에도 여성들은 저녁밥 준비때문에 더 바쁘다. 먹고 치워야하는 일 때문이다. 여기다 밤에 동원되는 공사나 교육이 있으면 남자와 똑같이 참석하여야 한다. 결국 여성들의 하루일과 시작도 남자보다 빠르다. 새벽 4-5시면 일어나서 밥짓고 집안일 보고 아기 돌봐야 할 일이 연속적으로 되풀이 된다.”

(소영식, '88.9.24 귀순)

5) 수단적 기본권

- 북한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신소나 청원시 그 침해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기 때문에 허울 뿐인 규정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 색출되었을시 당의 정책과 지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낙인 찍기 때문에 개인이익이 침해당해도 신소나 청원은 할 엄두를 못내고 있음.

< 주요사례 >

- “주민들이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소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보위부나 안전부는 그 내용을 해결하기보다 필적조사 등을 통해 신소자를 색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신소자가 밝혀지면 불러다 놓고 ‘무엇 때문에 신소하였는가?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치는가?’라는 식으로 심문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발각되었을 때 돌아오는 고

통때문에 신소도 못하는 실정이다. ... 너무나 억울한 입장에 처할 경우, 더 나쁜 대우를 각오하고 최후 수단으로 신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개는 보위부나 안전부로 불려가 심문당하다가 병신이 되거나 풀려나온다 해도 평생 요시찰대상으로 낙인찍혀 일생을 어둡게 살아야 한다.” (소영식, '88.9.24 귀순)

- “ '88.2경 김덕철(34세, 보통강구역 서장동 거주)이가 중앙당 신소과에 ‘경제정책이 현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투서를 하자 '88.5경 필적조사로 보위부에 검거된 후 소식을 모르고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김운학, '89.5.6 귀순)

나. 정치적 권리

1) 언론·출판의 자유

- 북한에서의 언론·출판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 하도록 그 존재 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 북한의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사전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그 내용이 이 규정에 충실한가를 승인받아야 인쇄·공표화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주민이 자기의사를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바
 - 김일성부자의 지시나 당 정책을 비판할 시 재판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찬성과 묵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으며
 - 외부소식의 북한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도서 및 녹화·녹음테이프의 반입 단속과 해외여행자의 주민접촉을 봉쇄하고 있음.

< 주요사례 >

- 헌법에는 주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하지만, 북한당국은 정부의 목적에 합치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주민들에게 『사회주의규범』과 『집단주의적 정신』에 따를 것을 규정한 헌법조항들이 개인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관한 조항보다 우선한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 거주했던 가족중 한사람이 정부를 비방하다 체포되어서 가족전체가 국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들이 『노동교화소』에 있다는 보도가 '92년에 있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1979년도에 어머니 제자가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안중기계공장 방송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당 위원회 선전부에서 비준받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산골로 추방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조선소년단’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보급하는 신문)이나 ‘새날’ 과 같은 월간 잡지에 글짓기 작문 하나를 써서 제출하려고 해도 우선 담임선생님의 검열과 소년단 지도원선생, 그리고 학교 당비서 선생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군당위원회 선전부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다”

(김성, '90.6.1귀순)

- “ '92.4경 청년 1명이 함북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4·15 상 축구경기』 관람도중 경기장 담에 올라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매를 살포하고 반김부자 구호를 외치다 현장에서 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구타당하여 즉사하였음. ”

(윤 옹 · 박수현, '93.10.11 귀순)

- 주석이나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노동교화를 받는다. '86년에 탈출한 한 사람에 의하면, 한 과학자는 그의 집에 있는 라디오에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집에서 김일성을 욕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89.5경 김정일은 외교부에 “ 서방기자들은 말썽을 피우는 일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방문을 허용하지 말고 제3세계 기자들도 현지 대사관에서 신분을 철저히 료해(확인)한 후 방북을 건의토록하라 ” 고 지시하여 외국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 방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위부의 외국인 감시요원이 반드시 안내·통역으로 동행하여 체류동향을 감시·통제토록하는 한편 외국인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초대소에는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일체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바,

- '89.6 제13차 평양축전 행사에 동원되었던 외교부 행사지원 팀인 “작전그룹빠” 5명이 평양 창광산 호텔객실에서 유경 호텔(105층) 건설을 화제로 “집이 모자라 동거세대도 해결 못하는 처지에 관광객들도 없는데 호텔만 크게 지어 뭘하겠는가” 하고 비난발언을 하였다가 도청되어 전원 지방으로 추방되었음. (고영환, '91.5.2 귀순)

· 북한은 국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 일본 언론인의 출입은 엄격히 관리된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러시아 언론은 접근이 제한되어 왔고, '91년 한해동안 그들 사무소의 상당수가 폐쇄되었다. 국내언론 검열은 엄격하며, 공식적인 정부시책으로부터의 이탈은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정치관료를 제외하고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라디오와 TV는 오직 국내방송만 수신할 수 있게 고정되어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88년초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 북한경제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김정일에게 “경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김정일은 “뭐 이런놈이 있느냐며 즉각 잡으라”고 지시하여 1명은 검거 처형되고, 1명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88.8 사회안전부는『남조선방송 청취자는 처벌한다』
며『모든 라디오의 재등록과 남한방송 청취 금지』 포고문을 발
표한 바 있음 (남명철 '90.4.1 귀순)

- 라디오 다이얼 납땜검열을 강화한 외에도 외국도서 및 녹화·녹음 테이프 등의 북한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바
 - '88.10 해외출장자들 대부분이 고위간부들로서 이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종래 무역부 소속이던 세관국을 사법·검열업무를 관장하는 당 중앙위 행정부 직속으로 변경, 권한을 강화시키고 출입국자들의 휴대품을 철저히 검색토록 지시하여
 - '88.12 공항 세관원이 공관장회의를 위해 평양으로 들어오던 대사들의 호주머니까지 뒤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외교가에 화제거리가 된바 있으며
 -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관리들이 휴대한 외국제 포장지 그림이나 상표까지 자본주의 인상을 준다고 압수조치하고 있고
 - 또한 국가기관이 업무상 공식반입한 서류류도 국가출판검열국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 외교부 등 해외출입자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매년 검인미필 도서 보유여부를 검열하고 있으며

- 사회안전부 요원들은 수시로 퇴근하는 직원들의 가방을 수색하여 외국출판물 휴대여부를 단속, 위반자를 지방으로 추방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음. (고영환, '91.5.2 귀순)

2) 집회·결사의 자유

- 북한의 모든 주민은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에 필요에 의한 결사만이 허용되고 있음.
-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임.
- 이같은 주민들의 정상적인 집회·결사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시가 봉쇄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표출이 벽보·삐라 등 음성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음.

< 주요사례 >

- 정부의 허가없이 대중집회를 열 수 없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정부는 이웃간 모임,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단으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100개가 넘는 북한의 대중조직들은 북한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에 동원되는데 그 예로 생산증대를 위한 천리마운동에의 참여 등이다. 또한 주민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외국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연도에 늘어서서 환영하는데 동원되며 전시회, 행진, 군중집회와 같은 행사에도 참가하여야 하는데 불참자는 혁명정신의 결여, 불충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미 아시아워치·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 공동보고서, '88.12)

- “1983년 4월13일 김일성종합대학 본관 16층 남자용 변소에 소형 시한폭탄이 설치되고 ‘김일성 왕조를 타도하라’는 내용의 삐라가 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김일성생일(4.15) 이틀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북한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인해 이 대학 학생 140여명이 체포되었다.” (조총련 방북자)
- “북한은 소·동구 붕괴후 유학생들을 소환, 사상검토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분산 배치하였는 바, '91.5경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된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었으며 귀순자 소속 청진광산금속 대학의 체코유학생 출신 김동국(30세)도 동 사건 연계혐의로 체포되었음.”
(윤 용, '93.10.11 귀순)

3) 참 정 권

- 헌법 제66조는 17살 이상의 모든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북한은 주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선거를 대내적으로는 당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대외과시를 위한 제도로 이용하고 있음.

< 주요사례 >

- 북한주민은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다.
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는 일년에 단지 며칠만 개최하고, 지도자에 의해서 제시된 안건을 단지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 북한은 민주주

의의 외양을 갖추려고 조직의 뿌리가 빈약한 몇개의 소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뿐인 대표권을 가진 단체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들의 주요목표는 외국을 방문하는 당대표를 통해 정부 시책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있는 것 같다.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또는 도·시·군당위원회에 대한 선거가 규칙적으로 실시될지라도 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선거에서 단지 한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율을 보인다고 한다. 3백만 노동당원(전체인구 2,200만명)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 엘리트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데 힘쓴다.

(미 국무부 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선거위원회에서 세대주부터 일련번호로 등록된 선거번호표를 받아 선거일 아침에 공민증을 휴대하고 선거번호표 일련번호 순서대로 줄을 서서 대기하다 투표를 시작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인명부와 대조한 후 위원들이 도장(붓뚜껑)으로 투표여부를 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칸막이된 투표장으로 이동하여 투표장에서 김일성 초상화에 절을 하고 찬성, 반대표시 없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찬성투표이며 반대표표를 하려면 별도 기재를 해야 하는데 감시원 앞에서 이런 반대표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장기홍, '91.11.28 귀순)

다. 사회·경제적 권리

1) 직업선택의 자유

-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 북한은 특히 제대군인들과 고등중학교졸업생들을 개인의 희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탄광, 협동농장 등에 무리배치(집단배치)하고 있음.

< 주요사례 >

- “직장 배치되는 졸업생들은 개인의 취미와 특기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배치장(노력파견장)과 식량정지증명서를 배치된 기업소나 농장에 보내 놓고 학교에서는 근무장소만 알려준다. 만약 졸업생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출근을 할 때까지 식량배급을 하지 않으며 ‘노력파견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초 배치된 직장에 출근하게 된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직장 배치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대부분 무리배치된다. 제대자들에게는 제대증·식량정지증명서·당 및 사로청원 이동증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치된 직장으로 발송하며 제대자들은 호송군관의 인솔로 배치된 직장 노동처까지 가서 인계된다. 무리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식량공급을 중지하므로 할 수 없이 출근하여야 한다. 무리배치를 하지 않은 인원들은 연고지 배치는 되나 직장은 지역노동과에서 임의로 배치하며 본인의 의향은 묻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자들도 대학 간부과에서 파견장을 주는대로 무조건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 전공분야에 인원이 보직되어 있으면 일반 노동자로도 보직된다” (김성, '90. 6. 1 귀순)

- “내가 군대 가기전에 보았던 일이다. 26살 먹은 동네 청년이 수도 난방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없어서 호주와 같았는데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니 직장에서 식량표를 주지 않아 어머니와 동생들이 받아온 식량으로 끼니를 이어 나갔다. 그러니 점심을 굶거나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했다. 북한에선 이처럼 일을 하지 않거나 무단결근하면 철저히 식량을 공제당한다. 우리동네 사람들은 그 청년이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굶고 사는 것이 안스럽게 느껴져 인민반에서 양식을 조금씩 모아 도와준 적이 있다.”

(이덕남 '90. 9. 7 귀순)

-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1989년도에 무리제대를 시켜 어느 누구 개인적 의사 파악도 없이 집단(무리)배치를 하였다. 이 때문에 제대자들은 군에서 제대를 하고도 부모 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채 노동현장으로 바로 내몰렸다. 이것은 북한 젊은이들 대다수가 겪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17살 때 군대에 초모되어 10년간 군대 생활을 한 후, 제대하여 고향으로 갈 때나 부모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대 후에도 고향에 갈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바로 무리배치를 당하면 부모형제와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인들은 제대 때가 다가오면 자기 고향지역에 무슨 공사가 계획되지 않나 하고 김일성의 신년사·당문헌·노동신문·조선인민군 신문 등을 살펴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것은 부모형제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은 어떤 공사가 예정되면 그 지역 연고지를 둔 사람들을 무조건 무리제대시켜 배치하기 때문이다. ”

(이덕남, '90.9.7 귀순)

- “우리 집의 경우, 나와 큰형은 인민학교 시절에 헤어졌다. 그후 나도 나이가 들어 군대에 나가고 형은 몇해 전에 제대하여 함북 새별군 탄광으로 배치가 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에는 군대에 나갈 때쯤 형제가 헤어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형제간에도 얼굴을 못 보고 헤어져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

(신광호, '90.10.20 귀순)

【참고】

계층별 식량배급실태

『매일공급』 대상자

- 대상자 : 당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 비서, 중앙당 부장, 제2 보위부(김정일 호위담당) 군관·사진사·재봉사, 김정일 서기실 요원 등
- 호위총국 공급과에서 백미(1일 800g),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최고급으로 풍족하게 가정에 매일 배달공급

『1주 공급』 대상자

- 대상자 : 중앙당 부부장, 부총리, 제1 호위부(김일성호위담당)군관 등
- 당 재정경리부에서 각 가정에 식량(1일 700g, 백미:잡곡=7:3), 육류,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주 1회 풍족하게 배달공급

『2주 공급』 대상자

- 대상자 : 당 중앙부서 지도원, 책임지도원, 과장 등
- 당 재정경리부에서 월공급량인 식량(1일 700g, 백미:잡곡 = 6:4),

육류 4kg, 물고기 10kg, 야채, 기름, 담배 30갑 등을 2주에 1회씩 분할 배달공급

『1개월 공급』 대상자

- 상기 『매일·1주·2주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 공급카드를 이용, 계층별로 5단계로 분류된 해당 공급소에서 매월 직접 수령

공급소	대 상	월 배급량
1 호	정무원부장·부부장 등	식량(1일 700g, 백미:잡곡 = 5:5) 육류(6kg), 물고기(10kg), 야채, 계란(30개), 기름(3ℓ), 담배(30갑) 등
2 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연합기업소 지배인 등	식량(1일 700g), 육류(4kg), 야채, 계란(15개), 맥주, 기름(2ℓ), 물고기(5kg), 담배(30갑) 등
3 호	정무원 각부처 국장, 책임지도원급 등	식량(1일 700g), 육류(2kg), 야채, 계란(15개), 기름(1ℓ), 물고기(1kg), 담배(30갑) 등
4 호	정무원 각부처 과장급, 항일투사 유가족, 영웅칭호자	식량(1일 700g), 육류(1kg), 야채, 계란(15개), 기름(1ℓ), 물고기(1kg), 담배(30갑) 등
일 반 공급소	일 반 주 민	식량(1일 700g, 백미:잡곡 = 4:6, 농촌은 1:9), 된장, 간장, 야채 등

2) 재산권 보장

- 북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에 국한된 것만이 개인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도 명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국가가 수용할 의사만 있으면 박탈당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주요사례 >

-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농촌에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주택에 한해서는 연고권이 재산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팔고사는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당시 친구 아버지가 집을 1천5백 원에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에서는 농촌에서도 개인주택이 없다. 모두 국가소유 주택으로 넘어갔다. 이젠 서로 팔고 살 수가 없다. 아파트의 경우도 소유권이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한번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말하자면 주택부가 비우라고 지시하면 한시라도 비워줘야 된다는 말이다.
평양중심 거리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침대·책상 등의 비품이 있는데 이런 비품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는 현상유지를 해놓고 떠나

야 한다. 내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인데 개인주택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면 국가적 보상은 없다. 모든 것이 거주자 부담이다.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나며, 만약 불이 났을 경우는 사용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벌금을 내거나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북의 실정이다. 또 북한에서는 개인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는 문서가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주택을 배정받아 사는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고통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택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려 해도 자재가 없어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에서는 주택을 보수하려면 개인이 목재·페인트·모래 등을 준비해 놓고 주택보수사업소에 기술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를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 얻어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쳐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단속이 되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적 소유로 된 주택인데 국가에서 자재가 없다고 고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우리로서는 직장의 재산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일부 주민은 떳떳하게 항의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개인 소유의 주택은 전혀 없고 100%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응당 국가가 보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조치를 기다리다 보면 당장 상·하수도가 막혀 버리고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소요자재비용을 개인부담을 해도 좋으니 건축자재를 판매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그래도 원천적으로 물자가 워낙 귀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택이 많으며, 이로 인해 직장의 재산에 손을 대는 주민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성, '90.6.1 귀순)

- 신희가정을 비롯, 일반노동자들의 43% 정도가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여 합숙소나 독신자 아파트에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거나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 살고 있다.

북한에는 ‘동거’라는 독특한 형태의 임대방법이 있다.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에는 구역(군) 당위원회,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당신 집에 동거살림 1세대를 들여라. 사정이 긴박하니 같이 고생하자”며 생면부지의 세대를 같이 살게 한다.

때문에 일부 눈치빠른 사람들은 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상점 판매원, 식당 접대원 등 자신에게 득이 될 사람과 상호연락하여 방을 내준다. 물론 임대료는 없다.

최근에는 시멘트, 강재, 유리, 목재 등 건축자재가 극히 부족하여 자재공급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택이 완공될 때 주택배정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받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명철, '93. 7. 15 귀순)

- “물건은 월별로 인민반에 할당된다. 품목은 대략 그릇·밥솥·신발·옷·어린이 자전거·부엌칼·독(항아리)·찬장·옷감 등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할 수가 없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거나 인민반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부터 구매권을 배당한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순서와 수량이 정해지면 배당받은 사람은 상품별로 정해진 가격의 돈을 내고 물건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물건은 자기소유물이 된다. 우리동네에는 TV가 1대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소유물이 아니었다. 지난 1990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 인민반 주민들용으로 시청하라고 당에서 무상으로 준 것 뿐이었다.”

(김 성, '90.6.1 귀순)

- “북한의 당 세포비서나 당 비서들은 식량곤란으로 애국미를 내지 못한 직장인들을 모아 놓고 ‘동무들은 왜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이런식으로 무성의를 보이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요? 당이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야 당원이라 말할 수 있지 애국미도 안내는 동무들을 당원이라 말할 수 있겠소? 당원이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솔선수범하여 충성심을 보여 주어야지 이게 뭔가요? 동무들은 비당원들보다 못하고 숫제 당원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오. ...’ 하면서 호통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소영식, '88.9.24 귀순)

3) 노동에 관한 권리

- 북한에서의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은 전 주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은 또한 노동법 제33조에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시키기 위함임.
- 그리고 헌법 제71조에는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노력경쟁운동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주요사례 >

- “북한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나같은 경우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에 대한 공부를 사로청 조직에서 17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할 때도 있었고, 농번기때는 읍내 농장에 나가서 국수 한 그릇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약 3시간 정도 야간

모내기작업을 했다. 또 금요일에는 강연회·집중학습 등을 노동시간 이후 1시간씩 하였다. ...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평상시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 해도 과외시간에 하는 정치행사 한번이라도 빠지면 비판을 면치 못한다. 1주일에 한 번 있는 일요일 휴식날에도 지역내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되어 방공호·해안방어벽·반땅크 모래장에 물 등을 만들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월 1회밖에 휴일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식량배급때 결근한 날짜만큼 공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있다.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3일 지각하거나 하루라도 무단결근(승인없는 결근)이 있으면 다음해에 휴가 15일을 중지시키는 직장도 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만 놓고 보더라도 월초에는 자재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직장에 나와 멍청하게 앉아 놀아도 무조건 출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재가 보급되어 작업이 시작되면 연장작업을 12 - 14시간씩 노동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사유 외에도 북한에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5-6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정전이 된다. 이때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들을 직장에 출근시켜 기다리게 한 다음, 불이 들어오면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성 '90.6.1 귀순)

- “나도 평양산원을 건설할 때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하였다. 나와 함께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8시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후 저녁밥을 먹고 새벽 2시 또는 3시까지 일하였다. 돌격대에 참가해도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없다. 공사가 끝나면 입당자격을 주거나 훈장·표창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고 돌격대에 참가한 전원에게 훈장·표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원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시범적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여 훈장이나 표창 또는 당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서로 경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총화를 실시하며 우수자를 뽑아 입당후보자격을 주거나 TV·양복지 등의 일용품을 수여하여 고된 노동도 참고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운기 '89.8.12 귀순)

- 북한에 정부와 관련없는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노동당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고려무역조합일반연합』이라 불리는 단일노동조직이 북한에 있는데, 이는 전에 소비에트 통제하의 『세계무역조합연합』에 가입해 있고, 이 조직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고전적인 소비에트 모델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이 생산성 목표, 국가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과 건강,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파업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로 협상할 권리가 없다. 임금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배정한다. 직업결정에 있어서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가 업무능력만큼 중요하다. 공장·농장 노동자들은(공장·농장)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북한관련부분)

- 1983년 김지수(37세)와 2명의 광부가 함경남도 은덕광산에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1982년 11월 광부소요에 참여한 혐의였다. 그 소요에서 징집된 광부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2년의 의무기간에 대한 자의적 연장에 항의하였었다.

(국제사면위 북한인권보고서('93))

4) 교육을 받을 권리

-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에 진학하려면 정치적 배경(출신성분)이 좋아야 함.
- 실제로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주요대학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바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사례 >

- “나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기간 10점 만점으로 최우등까지 받았으며 전교에서 1등 순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시 교육위원회에 등록된 종합명단에도 나는 10등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동료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다. 그러나 1979년 3월초 다른 학생들은 수험생 파견장이 나와 대학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제외되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대학생 모집처에 찾아가서 ‘그 학생은 성적도 뛰어나고 부모가 당원이고 선생도 하는데 왜 대학생 모집에서 빠졌는가?’ 하고 항의를 하니까 한 대학생 모집 책임 지도원이 ‘가족성분이 10호대상이기 때문’ 이라고 대답을 했다. 는 것이다. 그 말에 두 교장선생님은 어이없어 놀라기만 했다고 했다. 우리가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 된 이유는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학생 모집책임 지도원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전문학교는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교장선생님은 학생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중앙에 있는 대학에 시험이나 한번 보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는 평양철도대학에서 시험을 보았다. 내가 생각해도 시험을 잘 본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합격소식이 안왔다. 아버니는 애가 달아 평양철도대학 학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창생을 찾아가 나의 시험성적을 알아보았다. 성적은 좋았으나 간부과에서 성분관

계로 심사중이기 때문에 자기능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온 후에도 나는 며칠 더 합격 소식을 기다렸으나 내가 기다리던 소식은 끝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설계전문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하게 되었다.”

(김 성, '90.6.1 귀순)

- 중앙당부장, 정무원부장 등 북한 고위간부 자녀들에게는 무시험 특별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김』부자가 ‘당신 아들은 00대학 00과가 좋겠구먼’ 하는 말만 한마디하면 본인과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로가 결정되는데 이런 절차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간에 ‘교시받은 학생’ (김일성이 지정한 경우)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김정일이 지정한 경우)이라고 호칭하며 은근히 야유한다고 한다.

평양외국어대학의 경우 입학경쟁율은 15~21:1로 매우 치열한데 입학생의 80~90%가 당간부 자녀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의 입김이 대학입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실력으로 입학한 학생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학과 배정에 있어서도 인기가 제일 높은 영어과의 경우 90%이상이 중앙당 외교간부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다.

'88년 중앙당의 한 외교간부가 아들을 평양 외국어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교 고위간부에게 비디오셋트 6대와 수천달러의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적이 있다 한다.

(박수현, '93. 10. 11 귀순)

5) 보건의 관련 권리

- 북한은 전체 주민들에게 무상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모든 근로자들은 기본임금의 1%씩은 매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공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무상치료라 할 수 없으며
 - 내용면에 있어서도 의료시설이나 설비, 약품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혜택도 계층별·신분별 차별로 인해 일반주민의 경우 뇌물수수가 성행하고 진료절차가 까다롭고 형식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주요사례 >

- 출산과 부인보건의 중요한 문제다. 솔라즈의원도 다른 VIP들과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평양산원에 가 본 일이 있다. 이 병원은 하나의 전시장에 불과하다. 그곳에 있는 환자나 의사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배우들이었다. 이들은 이 산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문객이 나중에 농장이나 공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곳 종업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똑같은 사람이 공장에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또는 거리를 행군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병원에 있는 몇몇 여배우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았더니 그들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 병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곳에 있는 의료장비는 스웨덴이나 서독 또는 동독에서 가져온 고도의 기술장비들이다. 그러나 내가 스웨덴 회사들에 물어본 결과 그 회사들은 이 장비들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안내책자 같은 것을 보낸 일이 없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X-레이 필름이나 테이프 등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는 없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친구는 이 병원에 들렀을 때 한 장비의 사진을 앞뒤로 찍어 왔는데 그 장비의 전기스위치 프러그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사진은 지금 내가 가장 아끼며 보관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다. 엘리트들을 위한 진짜 병원은 비밀에 쌓여 있다. 즉 김일성과 그의 측근을 위한 병원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우리가 책을 출판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건문제와 영양상태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여자들은 18세 내지 20세가 되어야 월경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영양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여자들이 출산 시에는 출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철분섭취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영양상태에서는 출산율도 저조하게 된다. 여자들은 또한 폐병, 궤양, 간장 등의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출산저조의 원인이 된다. (케리건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 연구소 북한인권세미나 발표내용, 북한인권 심포지움 보고서)

- “42호 대상 환자(간염·결핵·폐라그라(영양실조환자)들은 대다수 격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급식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자들의 치료기간은 대부분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수도 계속 늘어날 뿐 줄어들지가 않는다. 북한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환자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단위마다 1개소씩 설치해 놓고 있던 결핵예방원·간염예방원·42호병원을 각 군 단위마다 증설하여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환자를 위해 외화를 탕진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외국에서 약 수입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42호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만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상태도 몹시 더디다. 42호대상 환자들은 종전 소련에서 수입하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였는데 수입제한 조치때문에 약이 떨어져 환자들은 입원하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이신·페니실린·포도당같은 의약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42호대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영양부족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인 고충, 김일성·김정일부자에 대한 맹종의 충성생활 등에서 많이 기인되고 있다. 왜냐하면 병이란 환자와 의사가 서로 나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가야 하는데, 북에서는 소위 ‘노동치료법’이란 것을 만들어 1일 2시간정도 환자들을 노동

에 동원시키고 있는데 이 노동에 나갔다 온 환자들은 노동에 더 환멸을 느끼며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데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임정희, '89.9.10 귀순)

- “그들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색깔이 있는 진료카드를 발행받아야 한다. 당원은 붉은색이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푸른색이다. 보통 붉은색 카드를 가진 당원들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더 신중히 검사받고 고급의약을 조제받는다.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옮겨진 푸른색 카드를 가진 51세의 노동자가 붉은색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는 2시간동안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채 들것에 누어 있었다” (최근 방북 일본인 증언)

【 참고 】

북한의 주요 특수층 진료기관

봉화진료소

- 위 치 : 평양 보통강구역 신원동 소재
- 이용대상 : 김일성부자, 장성택(김일성의 사위), 당 중앙위 및 정무원 부장이상과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 특별 2과 : 당 중앙위 비서, 정무원 부총리
 - 일반과 : 당 중앙위 부장, 정무원 부장

남산진료소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 소재
- 이용대상 : 김일성의 4촌이상 친척, 당 중앙위 부부장, 정무원 부부장, 부부장 대우를 받는 각급관리 및 직계가족

제 2진료소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장령급(장군급) 및 직계가족

인민무력부 간부진료소

- 위 치 : 평양 동대원구역 동대원동 소재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상좌, 대좌(대령급) 및 직계가족
 - * 중좌(중령급) 이하 군관 및 하사관은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11호 병원 이용

평양 의학대학병원

- 위 치 : 평양 중구역 동흥동 소재
- 이용대상 : 당 중앙위 지도원급 이상 및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당 중앙위 과장, 당 조직지도부 부과장 등
 - 특별 2과 : 당 중앙위 지도원 등

평양 김만유병원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동 소재
 - 이용대상 : 정무원 국장, 외교부 과장급 이상 및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정무원 국장, 국장급대우 간부
 - 특별 2과 : 외교부 과장 이상
- * 일반주민은 동 진료소 → 구역병원을 이용하고 중환자는 김만유 병원 등을 이용

(고영환 '91.5.2 귀순)

IV.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1.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 김일성은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당과 정권 반대) 등 매우 애매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12권, p. 217)
- 현행 형법에 규정된 주요 정치범 해당 죄는 다음과 같음.
 - 제51조 국가주권 전복 음모죄 : 당·국가기관에 대하여 무장 폭동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 및 반혁명적 시위
 - 제52조 조국반역죄 : 외국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 및 적 또는 외국 기관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 제56조 반동선전선동죄 : 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비방, 반동적인 출판물인 문서를 작성·보관·유포하는 행위
 - 제59조 반혁명적 음해죄 :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할 목적으로 국가의 산업·운수·상업 등을 파괴·저해하는 행위
 - 제62조 사회주의국가 반대 및 인민 적대죄 : 사회주의 및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반대하거나 혁명적 인민들을 적대시하는 행위
-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한해 무한정으로 처벌토록 하는 16개 조항(형법 제51 - 66조)을 명문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적법한 재판 절차없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 7호 사범(정치범)은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비공개, 단심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 정치범은 본인 외에도 가족, 친척(경우에 따라)까지 연계시키는 연좌처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바, 주로
-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북한 탈출 기도자, 북송 교포, 일부 납북인사들과

- 일명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당 정책 위반자 등 혁명화 대상자들임.

o 특히 북한은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 투쟁조직인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함과 때를 같이하여 비판자 및 정적들을 숙청,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음.

o 정치범의 체포, 처벌, 수용관리 등 모든 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전담하고 정치범의 호송 및 외곽경비 등은 사회안전부의 경비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정치범의 색출은 주민 10명당 1명 정도로 비밀 조직된 각급 정보조사망(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당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 정치범으로 낙인되면 야밤을 틈타 이웃 주민 몰래 전 가족을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음.

2. 수용시설 및 생활상

- 북한이 정치범을 특별수용하게 된 것은 1958년 연안파 숙청 사건(8월 종파사건) 연계자 및 그 가족을 교화소가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북한식 수용소군도인 정치범 수용시설을 북한당국은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들간에는 『특별독재 대상구역』, 『종파굴』,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등으로 불려지고 있음

※ 일반범죄 수용시설은 교화소 또는 노동교화소임.

< 수용소 현황 >

- 수용소는 함남·함북, 평남·평북, 자강도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20만여명으로 추계
 - 함남 : 요덕·단천·덕성군
 - 함북 : 은성(2)·회령·화성·부령군
 - 평남 : 개천·북창군
 - 평북 : 천마군
 - 자강도 : 동신군

< 수용소 규모 >

- 각 수용소 규모는 각각 51-250km²로서 수용소당 5,000명-50,000명 수용
- 수용소는 통상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대상자들의 죄질에 따라 격리 수용
 - 『완전통제구역』은 반당·반혁명분자, 종파분자, 해외도주 기도자 등을 수용하며 거의가 종신 수용
 - 『혁명화구역』은 불순 북송교포, 당정책 위반자, 자유주의 성향자 등을 수용하며 일정기간 (1-5년)경과시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 가능

< 경비 실태 >

- 각 수용소에 3-4m 높이로 2-3중의 외곽철책선과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고압 전기철조망·지뢰밭·함정 등을 설치
-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망루 초소가 있으며 감시망루에는 AK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감시원이 군견과 함께 외곽순찰 및 매복조를 운영하여 주야 경계
- 수용소안에도 건물주위에 내부 철책선을 설치

< 수용자 대우 및 일과 >

- 수용소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친지면회 및 서신연락 금지 등 외부와 차단
- 선거권·피선거권 등 기본권이 박탈되고 배급·의료혜택 등이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
-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으며 인원점검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는 경우 심한 구타를 당하고 3회이상 늦을 경우 월지급 식량에서 하루분 공제
- 작업은 5인조로 구성하여 저녁 9시까지 실시한 후 10시부터 1시간정도 金日成 덕담, 金父子 찬양노래, 주체사상 학습 등을 교육받고 점심은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식사
- 저녁 6시에 담당 보위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할당된 작업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작업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는 연장 작업
- 작업과 학습시간을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모여 다니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수용자로 위장한 정보원을 잠입시켜 수용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체제 비판자나 탈출을 기도하려는 자들을 색출

< 식생활 >

- 『가족세대』는 성인 1인당 주식으로 강냉이 550g(사회일반노동자 700g)을 책정하고 부식물은 소금과 주 1회정도 도토리된장한순갈을 배급토록 되어 있으나 작업태만 등을 이유로 수시 식량을 공제, 보름후에는 식량이 없어 산나물, 풀뿌리, 나무열매 등으로 연명
- 『독신중대』에 수용된 범죄 당사자의 경우는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을 제공하며 작업태만시 또다시 90g을 공제, 허기로 인해 통상 1년 수용기간중 15Kg씩 체중 감소
- 수용자들은 배고픔으로 돼지나 소 구유통속과 심지어 쇠똥속에 있는 강냉이알, 콩 등을 찾아내어 씻어먹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영양보충을 위해 개구리알을 먹거나 뱀, 쥐 등을 닥치는대로 취식
- 봄철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면 수용자들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뜯어 먹기 때문에 독버섯이나 독풀을 먹어 얼굴이 퉁퉁부어 고생하는 사례가 허다

< 주 거 >

- 가옥은 독신중대의 경우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나 가족세대의 경우 수용자들이 흙벽돌과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로 만들어 거주하기 때문에 판자가 썩어 비가 새고,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미장한 관계로 먼지가 많이 나며, 피나무 껍질로 만든 다다미를 깔고 생활

- 전기는 동네 자체 발전소를 이용, 매 가정에 전구 한개만 달게하고 저녁 7시부터 12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차례만 공급하고 있으나 너무 어두워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 마을에 따라서는 전기조차 없어 솔광으로 밥 먹을 시간만 켜는 경우도 있음

- 모든 세대가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수십명씩 줄을 서서 용변을 봐야하고 마른 강냉이잎, 콩잎, 호박잎, 칩잎 등을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
- 겨울철에는 마을주변에 나무가 없어 겨우 밥이나 하는 정도로 불을 때기 때문에 추위를 쫓느라 몸을 비비며 잠을 못자는 형편이고 하천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서 먹고 있음

< 의 복 >

- 『가족세대』의 경우는 수용기간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을 지급하며, 3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공급하나 『독신중대』는 수용당시 입고 갔던 의복 한벌로 생활

- 작업을 하기 위한 노동화는 1년 6개월에 1켈레, 겨울 솜동화는 5년에 한번 공급하고 양말, 팬티 등 속내의는 일체 미지급
- 모든 수용자들이 조각난 천으로 3단까지 기어서 입고 다니며 겨울철에는 얼굴, 팔, 다리 등을 천조각으로 감고 생활

< 각종 질병실태 >

- 수용자 대부분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폐염, 결핵, 간염, 폐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환자들은 격리 수용하지만 치료를 하지못해 저질로 사망
- 고환염, 치질에 걸린 중환자도 작업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려잡고 걷는자, 오리발 걸음을 하는자, 숨이차서 걷다 주저앉는 자 등 처참한 모습이며 걸음속도가 늦어 구타당하기 일쑤
- 수용소내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을 뿐아니라 약이 없어 요덕 수용소의 경우 매년 40-50명씩 병으로 사망

< 북송교포 수용실태 >

-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74년초 100여세대 600여명이 수용된

이후 매년 100-200세대씩 수용되어 혁명화 구역인 구읍·입석 지구 북송교포 마을에는 일가족 수용자 800여세대 5,000여명과 범죄당사자 300여명 등 5,300여명이 집단거주

-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수용소에 수용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으며 보위부원들은 이들에게 『반쪽밭이』라는 냉대를 하고 일반주민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
- 주간에도 상호방문을 규제, 수용소내 마을간 통행시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저녁 10시부터 통행을 금지
- 야간에는 보위부원과 작업현장 감독 3-4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가택점검을 실시하고 인원이 없을 경우 마을의 종을 쳐 비상을 걸어 수색 실시
- 야간 10시이후 이동하다 순찰에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하고 3회이상 적발시는 수용소내 『구류장』에 유치
- 북송교포들은 수용소 생활에 쉽게 적응치 못해 굶주림으로 폐렴, 간염 등 질병에 쉽게 걸려 북한주민에 비해 일찍 사망

< 공개 총살 >

- 도주기도자, 보위원 구타자 등 매년 15명 정도 공개총살

- 공개총살 대상자가 발생하면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통상 아침 10:00경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후 보위부원 2명이 처형대상자를 나무말뚝에 눈과 가슴, 다리부분을 포박하여 눈부위는 형겁으로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림
- 관리소장 등 간부 2-3명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소장이 “반역자 000에 대한 처형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대상자의 죄행에 대해 약 5분간 설명한뒤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다. 형법 00조에 의거 총살형에 처한다”고 선언
- 지휘자가 “민족반역자 000를 향하여 쏘”하면 보위부원 3명이 자동보총으로 첫번 3발은 눈부위를, 두번째 3발은 가슴부위를, 마지막 3발은 다리부분을 사격
- 시체는 가마니에 말아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실어 인근 야산에 매장

< 수용소 출소자 감시실태 >

- 수용소 출소시에는 수용소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누설치 못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재수감 조치한다는 사실을 경고

- 수용소 출소자는 탄광 또는 집단농장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며 북송교포 또는 뇌물을 제공한 일부사람은 공업지역에 배치되기도 하나 입당은 물론 직업, 여행까지 제한되고 국가보위부에서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목
-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농장, 기업소내 창고, 휴게실 등을 거소로 이용하고 미혼자의 경우 결혼이 어려워 수용소 출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출소시 공민증에 『000 경비대 농장원』이라는 별도의 기록이 표기되어 일반 사회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정치범수용소 출신이 일반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10년이 가중됨

3. 주요 수용인물

성명	전직	숙청사유
김창봉	부수상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
박금철	”	당 정책에 불만
김도만	당비서	”
김광협	당비서	반당, 종파분자
방철갑	해군 사령관(상장)	
김병하	국가보위부장	김정일 후계반대
허봉학	대남사업총국장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
이성실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권성철	외교부 참사실장	
유장식	당 비서국 비서	김정일 후계 반대
허익	당 중앙당학교 교장	
이기석	도시경영상(1차 내각)	
윤순달	당 연락부 부부장	
이동호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총장	
김경련	당 재정경리부장, 부총리	김정일 후계 반대
김양춘	제7집단군 사령관	종파, 유일사상체계 문란
정병갑	제3집단군 사령관	”
김동규	부주석	김정일 후계 반대

※ 상기 인물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 및 귀순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4. 정치범수용소의 주민구금 장소

○ 69호 노동교화소(노동갱생원)

- 모든 시·군에 설치되어 1개 교화소당 100 - 2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경범죄 위반자, 통행증 미소지자, 노력동원에 나태한 자들로서 대개 3개월 - 1년간 강제노동을 실시
- 이들은 사회안전부에서 선정하고 아무런 공식기소나 재판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음

○ 노동교화소

- 도 단위로 2 - 3개소씩 설치되어 주로 강간, 강·절도, 집단 생활 이탈자, 무단월경자, 정치사상범 자녀 등을 수용하여 대개 1 - 2년의 교화노동후 출소함

○ 교화소

- 도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본주의적 지식인, 정치적 반대자 등 “사상이 불온한 자”를 수용
- 교화소안에서는 일체의 면회나 사식 차입이 금지되며 만기출옥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받음

○ 149호 대상지역

- 1958년 사회주의 개혁에 따라 전주민을 통제와 감시체제로 조직화 하면서 『중앙당 집중지도』를 통해 소위 반혁명·적대분자를 색출, 약 7만여명을 『내각결정 149호』에 따라 산간벽지로 추방한 것으로 부터 시작
- 그 위치는 평양과 개성으로 부터 50Km, 휴전선과 해안선에서 20Km이상 떨어진 오지에서만 살도록 엄격히 통제
- 수용자들은 주로 탄광이나 광산, 채벌장 등에서 중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음
- * 이 지역은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철조망이나 경비초소가 없고 당국의 허락하에 타지역 왕래 가능

○ 정치범 교화소

- 수용기간에 따라 중앙(평양)에 3개소(15-20년 복역자), 지방에 8개소(10-15년 복역자)를 설치·운영
- 수용대상자는 김일성 부자 간접비난, 남한방송 청취, 간첩 간접지원 등 『7호사건』해당자를 재판없이 수용

○ 49호 보양소

- 2개군에 1개씩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동 장소는 정신질환자 치료명분으로 종교인, 지식인 등을 집단수용

※ 첨 부

1.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93 - '94)
2. 북한 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 발표('94. 7. 30)
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93)
4. 휴전이후 납북·억류자 명단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93년도)

1. 머릿말

- 양심수를 포함한 수천의 사람들이 1960년대 이래 북한당국에 의해 다양하고 자의적인 형태로 수용되어 있다고 이전 수용경험자는 전한다. 수천의 사람들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로 수용되어 있거나 고문, 즉결처형되고 있다.
- 수용자들중에는 외국국적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에서 고향을 방문한 한국인, 지식인과 학생, 정부관료, 노동당원, 그리고 이들가족과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의 가족들이다.
- 다수가 실종되었는데 수년동안 심지어는 수십년동안 그들에 대한 소식은 알 수 없으며, 북한당국은 이들 피해자들의 생사확인을 인정치 않고 있다.
- 북한 당국자는 북한전역의 최소한 12개 시설에 수만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1991년 사회안전부 요원은 위원회에 말하기를 “북한전역에는 3곳의 노동교화소에 1000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일부 반국가 행위자들은 격리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단 한명의 수용자 이름과 수용죄목을 밝히지 않았다.

- 북한당국은 반복적으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며, 정치적 음해라고 비난해 왔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수용시설을 방문하거나 인권침해보고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관찰단의 방북을 허용치 않았다.
-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광범위하다는데 깊은 우려를 가지고 북한당국에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정치범과 수용자들의 명단공개를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당국에 이들의 수용된 죄목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 이 보고서는 위원회에 보고된 양심수들의 투옥과 인정되지 않는 수용의 사례와 수용소내의 고문과 사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였다. 또한 인권에 대한 공식적 보장이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정치범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의 친척들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이전에 수용되었던 사람을 포함한 다른 북한 소식통에 의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1년 평양에서의 북한관리가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도 인용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맥락(배경)

- 한반도는 일본의 36년 식민지배이후 1945년 각각 미국인과 소련에 의해 통치되는 그 군사지역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1950-53)은 한반도의 대부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최소한 100만이상의 한국인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기간동안 이산되어야만 했다.

1953년이후,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차단하였으며, 1953년 휴전선을 넘는 교통은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남북간에 직접적으로 통행, 통신, 서신연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전선을 경계로 양쪽의 국민들은 서로 다른 편의 사람들과 접촉, 회합을 시도할 경우 수감되어 진다. 1953년이래 한반도의 2천만 정도가 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 1948년 정부 수립시부터 북한의 통치자가 된 김일성은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그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현재에 와서는 국가주석과 대원수로 군림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1949년 창당이래 정치권력을 독점해 왔다. 최근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북한은 노동당의 지도아래 모든일을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노동당을 제외한 몇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 보고에 의하면 노동당원은 북한전체 인구 2천2백만명중 3백만명이다. 김일성은 당 비서장이며 그의 아들 김정일은 당정치국 상무위원 3명중 1명이다. 당의 고위층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에 의해 선정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위원과 후보위원이다. 사실상 정부는 단지 노동당의 지도에 책임을 질 뿐이다.

- 정무원은 총리와 몇명의 부총리에 의해 지도되며, 국가주석이 의장인 중앙인민위원회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며, 정무원 활동이 지도되어진다. 정무원 총리와 부총리는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의 경우처럼 북한내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도록 1972년 헌법(1992년 개정)에 규정되어 있다. 692명의 대의원은 1년에 한두차례 몇일간의 회의를 하며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명목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 군부는 국방위원회에 의해 지도되며,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1991년 원수칭호 수여이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 북한은 130여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한과 1991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의 외국여행과 외국인의 방북이 정부에 의해 제한받음으로써 부분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념차이와 국방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과 타국간의 긴장된 외교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 외국무역업체와 북한방문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수년동안 빈곤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에너지부족은 몇개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일부계층 특히 억류자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경남도를 방문했던 한 인사는 식량과 에너지부족은 지난 1980년대의 몇몇지역의 사망증대의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전 수용자는 동료들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었다고 말했다.

- 식량, 의류배급과, 에너지 제한공급은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확인되지 않는 보고에 의하면 1992년과 1993년에 몇 지역에서 식량부족에 항의하는 시민폭동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에 의하면 1992년이후 불법적으로 물건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은 1991년 북한을 방문하고 외교부, 사회안전부 요원은 물론 판사, 변호사, 법학자들을 면담하였다.
1992년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북한내 인권의 헌법적·법적 안전보장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를 표명한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북한당국은 위원회 비망록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재차 방문하자는 위원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2. 양심수와 정치범

- 이부분은 북한에 억류된 양심수와 국제사면위원회가 양심수라고 인정하는 사람, 즉 사상과 인종, 성, 피부색, 언어의 차이로 인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게 이러한 사람들과 몇몇의 경우 이들과 함께 수용된 가족들의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2.1 “A”와 그의 가족

- “A”는 1942년 일본 오스카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친척들이 국제사면 위원회에 그의 이름을 공개치 말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름공개시 북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였다. 일본거주 한국인으로서 그는 일본 오스카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1965년 북한을 방문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그곳에 정착, 평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1973년 A는 그의 부인과 두자녀와 함께 북한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내부 추방 장소로 보내졌으며 함경남도 오로군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북한의 비공식적 소식통에 의하면 1982년 12월초 어느날 밤 그의 가족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화물자동차에 강제로 탑승되어 미상의 장소 이동되었다. 1992년 일본거주 한국인을 방문한 익명의 사람에 의하면 A와 그의 가족들은 감옥에 수용되어 있거나 함경남도 소재 노동 교화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한당국은 A와 그의 가족들 소식에 대한 친척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A와 그의 가족들을 양심수로 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A와 그의 부인이 류마티즘으로 인해 수년동안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2 신숙자 모녀

- 신숙자(50세, 라디오 아나운서)와 그녀의 두딸 오해원(17세), 오규원(14세)은 1986년 11월 신숙자의 남편 오길남이 덴마크에 망명한 이후 수용되었다. 비공식적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신숙자모녀는 함경남도 요덕의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숙자는 남한에서 출생, 교육을 받았다. 1970년 그녀는 독일의 튀빙겐에 가서 간호원으로 일했으며, 1972년 경제학을 전공하던 남한인 오길남과 결혼, 1976년 1979년 각각 독일에서 해원, 규원 두 딸을 낳았다. 오길남은 당시 남한의 군부독재에 대항한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 1985년 12월 신숙자, 오길남, 두 딸들은 경제학자로 근무하라는 북한의 제의에 의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북한도착 이후 그들은 평양근교 초대소에서 수개월동안 체류하면서 주체사상학습을 강요받았다.
- 1986년 6월 신숙자와 오길남은 라디오방송국에서 대남방송 임무를 맡게 되었다. 1986년 11월 오길남은 독일로 가서 그곳의 남한학생들을 북한으로 이주토록 권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독일로 가는도중 덴마크에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으며 1992년까지 오길남은 유럽에 머물다가 남한으로 갔다.
- 신숙자 모녀는 오길남의 독일여행기간중에 북한에 머물도록 요구되어졌으며 그들은 오길남이 망명을 요청한 이후 곧바로 수용되었다.

독일내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1987년 오길남은 “그의 가족이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식적인 북한의 중개인이 오길남에게 1988년 1989년에는 가족편지를, 그리고 1991년에는 사진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1986년 이래로 그의 가족과 접촉할 수 없었으며 거주지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었다.

- 이전 북한수용자에 의하면, 신숙자 모녀는 1987년 11월에 함경남도 요덕의 노동교화소에 수용되어 1989년까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 모든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국제사면위원회는 신숙자모녀를 오길남의 해외망명으로 인해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라고 믿으면서 북한당국에 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2.3 시바따 가족

- 생존해 있다면 시바따는 62세이다. 그는 1964년 10월이래 양심수로 수감된 이후 1990년 후반까지도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의 소식은 없다. 그의 부인 신성숙과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수용되어 있으나 그들의 정황은 알길이 없다.
- 시바따 고조는 일본인이고 신성숙은 일본거주 한국인이었으며 그들은 1950년 두자녀와 함께 북한을 방문, 평양에 정착케 되었다. 시바따와 신사이에서 1961년 3번째 자녀가 출생하였으며 가끔씩 일본의 친척들과 서신교환을 하였었다.

- 일본거주 친척에게 보낸 1964년 10월 5일자 편지에서 시바따고조는 건강은 좋으며, 가까운 장래에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라고 적고 있으며, 그것이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 1965년 1월 신숙자는 일본거주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서 “1964년 10월 7일 그녀의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요양소에 보내졌으며, 그녀 자신도 몸이 아파 집에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남편이 돌아오는대로 다시 편지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 1973년 일본 조총련은 일본거주 친척들의 요청에 시바따는 북한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 이후 19년간 일본의 시바따와 신의 가족은 더이상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 1992년 12월 일본잡지 주간 분순은 북한을 탈출한 이전 수용자에 의한 정보에 기초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시바따는 성호마을의 정치범수용소에 1984년이래 수용되어 있으며, 1990년 12월까지도 그곳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 12월이후 시바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없으며, 신성숙과 세자녀에 대한 소식도 없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도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 시바따고조에게 무슨일이 발생했는가? 》

- 1950년 북한에 도착한 이후 시바따는 평양소재 출판소의 일본어 편집자로 고용되었으며, 1962년에 북송 한국인의 일본인처 몇명이 친척방문을 위한 일본귀환 허용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시바타는 일본인처들이 공개항의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공식조사에서는 시바타가 1958 - 1959 가가와현 노동부에 근무하던 시절 경찰수배자를 은닉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유일한 사실로 인해 일본인처들의 항의를 사주했다는 혐의로 시바타는 1962년 10월 7일 체포되었으며, 간첩혐의로 고소되었다. 시바타의 경우를 잘 아는 북한의 이전 수용자는 주간『분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간첩혐의로 고소된 시바타는 비인간적인 심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자유스럽게 움직이거나 누울 수도 없고 음식공급도 충분치 못한 개집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으며 아마 어느 누구도 당국자가 말한 바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시바타의 경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서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가 시인한 것 모두는 강요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시바타는 평양 남동쪽 평산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후에 평양북쪽 개천으로 이감되었다가 후에 평양 70km 동방의 성호마을로 이감되었다. 그는 수년간 채석장이나 질석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현저하게 건강상태가 악화된 후에는 강제노력은 없었다.
- 1984년 10월 시바타의 20년형(선고전 구속기간 2년포함)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수감되었으며 수용소 당국은 그에게 어떠한 일자리도 주지 못할 것이므로 계속 수용한다고 밝혔다.

- 1990년 후반 수용중인 시바따의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걷기조차 힘들고 소량의 배급식량도 먹기 힘들었다고 이전 수용자가 전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그는 감정이 황폐화되었으며, 삶에 대한 희망이나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 1992년 12월이래 일본거주 시바따와 신의 가족들이 북한당국에 대해 그들의 소식을 알려 달라는 노력은 성과가 없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시바따 고조가 양심수이므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북한당국에 신성숙과 세자녀의 생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2.4 외국 무역부 고용자들의 수용

- 국제사면위원회는 1993년 3월에 평양소재 외국인기업소 북한고용인 수명이 간첩혐의로 수감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접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된 정보를 팩스를 통해 해외로 누설했다는 혐의며, 수용자 수와 명단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이들 수용자들은 일본과 북한합영회사의 평양지사에 고용된 현지인들로 알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억류자들을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북한당국에 이들의 소재를 설명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정한 재판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5 알 수 없는 수용

- 당국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은 고문과 재판과정 없는 형의 집행 등의 인권침해를 받을 소지가 더욱 많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수용은 해외거주 한국인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대외적인

통신제한과 당국의 침묵으로 인해 이에 대한 확인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해외거주 한국인 3명은 “누구와도 북한거주 친척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지말 것은 공개적으로 경고 받았다”고 국제사면위원회에 말하고 있다.

-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 속에는 1950년대 후반 북송된 일본 거주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1950년대 중반에 투옥되었다. 일본의 그들 친척들은 그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으며, 북한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접할 수 없었다.
- 수용가 되었을법한 또다른 사례는 망명을 한 북한인 가족들이다. 남한 정부의 공식적 숫자에 의하면, 한국전쟁후 정치적 이유로 632명의 북한인이 남한에 정착하였으며 소수가 제3국으로 망명하였다. 이들 망명자 대부분은 북한을 떠난 후 그들의 친척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들중에는 다른나라로 탈출한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해외에 망명을 요청한 가족으로 인해 수용된 사람들을 양심수로 이해하고 이들의 신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하나의 경우로, 김명세(43세, 김일성대 지구물리학자)의 부인과 자녀는 그가 1992년 러시아에 망명한후 수용되었음에 틀림없다. 김명세는 모스크바대학에 박사과정 공부중이었다. 1991년 10월 그는 북한당국으로부터 평양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이는 그가 남한학생과의 모스크바 접촉결과를 보고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귀환을 거부하고 1992년 6월 러시아에 망명을 요청했으며,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김명세가 1992년 중반이후로 북한거주 가족소식을 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이 이전 거주지 평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1960년대 북한에 정착한 일본거주 한국인의 일본인처 1,800명이 포함된다. 이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거주 친척들과 서신교환을 하거나 그들이 방북했을 때 상봉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친척들은 수년동안 접촉할 수 없었으며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정보와 다른 수용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3. 사 형 ; 형집행 종합

-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22조는 사형을 범죄자에 부과되는 2가지 기본적 형벌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노역을 통한 교화이다. 북한관리는 국제사면위원회에 말하기를 사형은 극히 희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정도와 이의 집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전에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던 수용자나 또는 방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형이 빈번하고 최근 수년간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에도 사형이 집행된 일이 있으며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수십명에 달한다고 함.

-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에 의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어린학생들을 포함한 노동자 청년학생이 참석한 공개집회에서 사형수가 처형되기도 한다. 이러한 집회에서 범죄자의 죄목과 선고문이 관리에 의해 읽혀진다. 사형집행은 다른장소로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공개처형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소에서는 동료들이 모인 장소에서 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 1983년 김지수(37세)와 2명의 광부가 함경남도 음덕광산에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1982년 11월 광부소요에 참여한 혐의였다. 그 소요에서 징집된 광부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2년의 의무기간에 대한 자의적 연장에 항의하였었다.
- 1992년 11월 북한의 외국유학생에 의하면, 함흥시에서 이름미상의 남자가 공개처형되었다고 하며, 처형공고가 수일전에 함흥시 거리에 나붙었으며, 그 남자는 폭력과 사상범으로 고소된 경우였다.

4. 수용 조건

- 북한의 수용소 실태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치범을 수용하는 12개 수용시설에 대한 보고는 있다. 북한관리에 의하면, 북한에는 수용소가 없다고 한다. 관리는 1991년 국제사면위원회에 말하기를 “수용시설은 사회안전부 건물내부에 있으며 재판대기중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고, 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화소 시설이 별도로 있다”고 하였다.

1991년 사회안전부 요원을 평양근교에 3곳의 노동교화소가 있다고 하였으나,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평양 사회안전부 건물내의 빈방을 볼 수 있었으며 관리들이 말하기를 매년 수감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함경남도 요덕의 수용소 조건은 1992년 남한으로 귀순한 강철환(25세), 안 혁(25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요덕에 수용중인 수천의 사람들중에는 정치범과 어린애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으며, 벌목이나 경작 등과 같은 강제노역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의복은 3년에 한번 제공되며, 음식은 불충분하고 의료시설은 거의 존재치 않으며 몇몇 수용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 다른 전장 수용자에 의하면 수용시설에는 수용소 규칙을 위반한 자들을 수용하는 처벌실이 있다고 하며, 처벌실은 똑바로 서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든 작은 방이라고 한다. 이 처벌실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금지한 처벌과 학대, 고문 등을 받으면서 수주동안 있곤 한다.

4.1 러시아 극동지역 노동자들의 수용

- 2만명의 북한인들이 현재 러시아연방 아무르지역과 하바로브스크지역 벌목장에서 북한관리들의 지시와 러시아정부와 북한정부간의 합의서에 따라 일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993년 12월에 종료되는 1991년 7월협정이 러시아당국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재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의 북한노동자 몇명이 북한관리에 의해 노동자 숙소의 이동식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이 보고에 의하면 억류된 이들은 북한관리의 허가없이 벌목장을 탈출하려한 노동자와 벌목장 규칙을 어긴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 억류자들이 기소나 사법적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수용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수용시설이 열악하며 고문과 심한 비인간적인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1993년 9월 러시아언론에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회가 북한 벌목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 사회안전부 요원은 러시아 조사단에 6일에서 6달 정도의 기간동안 벌목장내의 재교화소에 수용한다고 인정했다. 수용된 사람들은 러시아 사법당국 승인없이 이루어졌다고 인권위원회 대표단장 세르게이 코발요프는 말하고 있다.
- 러시아 언론인에 의하면 1992년에 당국 허가없이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는 63명이며 적어도 19명 정도가 붙잡혀서 벌목장내에 수용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한다. 1992년에 벌목장을 탈출한이들중 15명은 남한에 정치적 망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 벌목장내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수용된 북한노동자중 수명이 양심수이며, 그들이 단지 다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용되어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아무도 공식적인 사법적 감독과 국제적 인권기준에 의함이 없이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 주재 북한당국에 이들의 즉각석방을 요구했으며 러시아 당국에는 국제인권기준과 러시아법에 위반된 억류자가 없도록 요구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 당국에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북한노동자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치 말 것과 이들을 러시아당국이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5. 헌법과 법적 배경

5.1 국제인권조약 비준

- 북한은 국제공민·정치권 협약(ICCPR)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을 1981년 9월 비준했다. 북한관리는 양 협약은 1981년 비준에 의해 북한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조항과 상반될 때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불명확하다.
- 인권위원회는 양 협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ICCPR 협약이행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1983년 최초로 북한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인민공화국 인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공화국의 사회주의 헌법에 이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인민들은) 선출과 피선출의 민주적 권리는 물론 사회정치적 활동에서 실제적인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발표, 언론, 집회, 결사, 시위 등을 포함한 사회정치분야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는 “아무도 고문이나 잔악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형법은 불법적으로 체약이나 폭력에 의해 자술을 강압한 자는 1년이상의 재교화노동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는 “아무도 고문이나 잔악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형법은 불법적으로 체약이나 폭력에 의해 진술을 강압한 자는 1년이상의 재교화노동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 관행을 고려치 않더라도 헌법과 법적안전조치들은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한 국제협약(ICCPR)의 상세한 조치에는 미흡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이 북한에서의 ICCPR의 완전한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보고서가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치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북한은 인권위원회에 ICCPR 이행에 관한 2차보고서는 1987년 이래 제출치 않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인권위원회는 북한당국에 10회이상의 촉구를 한 바 있다.

5.2 기본적 시민권과 정치권의 헌법적 보장

- 북한의 현재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92년 4월에 군지휘부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을 하였으며 5장은 발표, 언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67조)를 비롯 종교의 자유(68조)를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80조 “인민은 정치사상적 일체와 인민의 공고성을 굳세게 보장해야 한다” 63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의 규정이 있으며, 더 나아가 81조에서는 “인민들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 삶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 5장에서 언급된 권리에 우선하는지 또는 63조 규정이 다른 헌법조항에서의 보장폭을 제한하는지는 불명확하다.

5.3 형법 ; 정치범죄와 처벌형태

○ 사회주의법은 북한당국의 고위관료와 당지도자에 의해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의 무기라고 설명되고 있다. 1980년대 발표된 고위간부들의 연설에 따르면 경증을 떠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라고 하고 있다. 당시에 1950년대 제정된 형법을 개정중이었다.

그당시의 이러한 연설은 새로이 개정되는 형법은 대단히 억압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으며, 개정형법은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형법의 한국판은 1991년 국제사면위원회가 입수되었으며, 영문판은 1992년에 발간되었다.

○ 29페이지로 번역된 형법은 8장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 형법 총칙 (8개 조항)
-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제한(35개 조항)
- 반국가범죄(12개 조항)
- 사회주의경제 침해범죄 (41개조항)

- 사회주의문화 저해범죄(6개 조항)
- 공무원 결정에 대한 위반범죄 (28개 조항)
- 사회주의 집단적 삶에 대한 위반 범죄 (10개 조항)
- 인민의 삶과 재산의 침해 범죄 (21개 조항)

○ 형법의 다수조항이 구체적으로 정치적 위반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러한 조항들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표현과사상, 집회의 자유 등의 권리의 비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사람을 체포·기소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의 80, 81조와 관련해서 형법의 몇개 조항은 비폭력적 활동과 공식적 지시와 어긋난 행위를 범죄화 할 수 있다.

○ 다음의 형법조항은 국제사면위원회가 특별히 우려하는 조항으로서, 이들 조항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사상의 표현과 결사권의 행사나 파업과 같은 비폭력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형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중요한 형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44조; 공화국 전복음모에 가담하거나 반역 한 사람은 5년에서 10년범위의 교화소에 수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음모의 주동자나 배후조정자, 주요관련범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고 모든 재산을 압수하며 10년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46조; 공화국 침해·파괴, 전복을 사주한 자 또는 다른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자는 7년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50조: 반국가적인 체제전복행위 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53조: 공화국인민이 아니면서 절대적인 행위, 즉 조선민족의 민족해방 투쟁을 박해·억압하거나 해외조선민족의 민주적 민족투쟁을 박해·억압하는 자는 5년 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103조: 반국가 동기없이 국가기관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공공 질서의 중대한 파괴를 하는 자 는 5년 이상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105조: 그릇되거나 확실치 않은 소문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해 퍼트리는 자 는 1년 이상의 교화소 수용에 처한다.

○ 1992년 5월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형법에 이들 조항과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구하면서 특히 법정에서 이들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물어봤다.

1992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는 평양에 설치된 인권조사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과 형법과 다른 문제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상의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으나 “긍정적인 답변”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으로부터 현재 이 보고서가 간행된 시점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991년 후반에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이 법의 사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5.4 사형

- 사형은 1987년 형법 22조에 2개의 기본형벌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다. 사형은 범죄행위시 17세이하이거나 임신부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ICCPR에 의거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사형 선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또한 이를 위한 형법개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정중에 범죄행위시 18세이하의 수감자 처형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사형은 재통일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억압하는 목적의 제국주의와의 공모행위와 민족을 제국주의자에게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 다음의 범죄는 선택적으로 처벌받는다.
 - ◆ 국가를 배반하거나 망명, 간접죄, 이적행위 등의 극단적 경우(47조)
 - ◆ 공화국 전복음모나 반역의 “사주”, “주모”, “주요범” (44조)
 - ◆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당·정과 애국인민들에 반대하는 폭력적 행위(45조)
 - ◆ 살인, 특별히 중대한 경우(141조)
-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중 몇몇은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여 당국으로부터의 해명을 요구했다. 1991년 북한방문 기간중 국제사면위원회 대표단은 형사정책상 사형은 간첩행위나 직장파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또한 사형에

대한 통계수치가 있는 것으로 들었으나 접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형법에서의 사형은 2개의 기본적인 형법중 하나라는 설명과 북한인들에 의해 사형이 빈번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북한당국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다.

6.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면서도 양심적인 신념이나 또는 인종, 성, 피부색, 언어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특히 양심수와 유사양심수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람은 당국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모든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 보고된 바의 이해할 수 없는 억류희생자에 대한 해명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공개되지 않는 억류자들의 운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당국은 특별히 북한에 재정착한 일본거주 한인들의 운명과 불법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한국인의 일본인처들에 대한 운명을 설명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며, 이는 삶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과 잔악, 비인간적 처벌의 궁극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사형을 폐지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감자들의 공개처형 중단을 촉구한다.

◆ 수용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중단하라.

북한당국은 모든 수용자들이 고문과 학대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수용조건이 수감자 대우의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에 노동부과, 식량·의복공급, 그리고 수용자들의 거주가 수감자대우의 UN최소규정기준 관계조항과 일치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독립기구들이 정기적으로 억류(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권보장을 실행하라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당국이 ICCPR에 명시된 인권보장조치가 북한법과 관행내에서 완전이행되도록 촉구한다. 북한당국은 특히 모든 재판절차가 공정성의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하고 수감자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나 고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에 필요한 구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양심수 수용을 규정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하거나 어느 누구도 기본적 권리의 평화적 행사로 인해 수감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94년도)

『불공정 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도 없이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이들 중에는 소위 반체제인사라 불리는 자의 친척 또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수백명의 정치범들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수감경험이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조건은 열악하며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매우 고립되어 있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북한인의 외국 여행과 해외동포의 북한입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독립적인 업저버자격의 인권침해 조사나 구금장소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

'93.3 국경 근처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중 북한당국은 '준전시' 상태를 3주동안 선포하였다. 같은해 4월 김정일은 김일성에 이어 최고 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93.12 노동당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세계적인 여러 사건으로 인해" 계획된 경제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당은 또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당의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94.1 국제앰네스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창하가 소장으로있는 『인권조사연구소』가 '92년 평양에 창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연구소의 활동영역은 불명확하나, 북한정부는 이 연구소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92)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992년말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93.6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백인준은 비엔나 UN세계인권회의에 참가하는 북한대표단을 인솔하였다. 그는 “각나라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각주권국가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며, 국가에 대한 간섭과 비합리적인 압력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언급은 하지않았다.

수감자와 양심수라 추측되는 사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중에는 “국가반역죄”로 고발된 사람·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의 친척, 그리고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접촉을 하였던 사람들이 포함된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93.3 한 여인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외국학생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4년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되었다고한다. 그녀가 재판을 받았는지 재판없이 구금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시바타 고조는 1964년 이후 수감되어 있는 일본국적의 구금자인데 그 또한 양심수라 여겨진다. 그는 평양에 거주하는 일본여성이 일본에 있는 친척 방문을 위한 허가가 거부된 사실에 대한 집단적 항의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고 1984년에 풀려 났어야 했다. 그러

나 그는, 나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1990년말 평양근처에 있는 승호 마을에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다고한다. 그후 그에 관한 정보는 없으며, 그가 석방되었다는 정보도없다. '82.12 두명의 수감자들이 두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안국 관리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감금되었으며 친척들과의 면회나 연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이 재판 과정도 없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유학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재교육”을 위한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들중에는 어린이와 젊은 사람도 있는데 18세인 오해원과 15세의 오규원도 포함된다. 이들은 아버지가 외국으로 망명을 한 후, 어머니(신속자)와 함께 1986년 이후 함경남도 요덕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 시설에 수감되었는데, 이들은 양심수이다.

정치적 수감자들중 일부는 재판없이 구금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후자의 경우 노동당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 재판관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믿어진다. 변호사들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수인에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경우, 북한당국은 정식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명백히 행정적인 구금형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떠한 법률적인 조력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효과적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속에 수감되어 있다. 전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수년전에 많은 수감자들이 추위·기근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도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모든 권리가 박탈 당한채 있다고 말하였다. 일부 수용소는 수감자 중에서도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이 수용되는데, 외부에서 일체의 음식과 물품이 공급되지않고 수감자 스스로 생존을 위한 양식을 생산한다고 한다.

일부 북한의 별목공들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북한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별목장 안의 임시수용소에 구금되는 걸로 알려졌다. 별목장을 탈출하려 했던 사람들은 북한과 구소련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구금된다 한다. 이것의 구금시설에 대한 관심과 별목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러시아 당국은 별목장을 '93년말까지 중단하도록 결정하였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형은 정치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1987년 북한 형법은 사형을 범죄자에 부과하는 “기본적 형벌” 두가지 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 투쟁을 저해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와 공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또한 “제국주의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부과되며, 공화국을 점령하려는 음모나 반란에 가담한 자, 노동당과 정부의 “기간요원과 애국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 그리고 살인 및 특별히 중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를 배신

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에는 이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되어있지 않다.

북한당국은 1991년 국제앰네스티에게, 사형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실시된다고 말하였지만, 자세한 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형집행 통계는 갖고 있으나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형에 관한 발표를 목격한 사람들, 이전수인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에 따르면, 1993년 동안 사형은 경제사범을 포함해 빈번히 이용되었고, 해마다 수십명이 사형되었다고 한다. 1992년 11월의 한 사례는 (정부 보고에 따르면 10월) 30세의 주수만씨 경우인데, 공식적으로는 “상습폭력범”으로 기재되었는데, 살인죄로 판결받아, “인민의 요구에 따라” 공개처형 되었다. 1992년 또다른 사례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노동자와 학생이 참가한 공공집회에서 사형집행이 실시된 경우이다. 사형집행은 그러한 집회군중 앞에서 실시된다 한다. 수용소안에서는 수감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사형집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한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감된 사람 및 사형집행에 관한 정보를 북한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10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국제앰네스티 우려에 관한 요약”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양심수들의 사례, 다른 정치적 수인들의 사례, 가혹행위에 관한 증언, 그리고 사형제도의 사용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1982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협약』 및 다른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 헌법의 부적절한 인권보호 규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헌법의 규정이 애매하여, 기본적 권리를 위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음에도 “반란”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 “공화국을 모반하기 위해 타인을 선동한” 사람으로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양심수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모든 정치적 수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거나 석방할 것, 가혹행위로부터 모든 수인을 보호할 것,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하고 사형을 철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실제적인 인권보장과 그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요구하였으며, 독자적인 인권조사와 감시를 위해 북한을 개방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북한당국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 무근이거나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기술하면서, 그 보고내용을 “범주적으로 거부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양심범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형법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비판에 대해, 북한당국은 “반국가적 범죄”와 관련된 규정은 “범죄 예방의 기능이 있으며 드물게 적용된다”라고 했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한별목장 수용소가 범죄자 수용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것은 “단지 교육장소이며”, “노동자들에게 러시아법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사형이 드물게 적용되고, 정치적인 이유로는 그 어느 누구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개처형은 인정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방문하여 인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북한 정치범관련 국제사면위 발표 ('94. 7. 30)

- 북한 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 -

< 서 문 >

이 문서는 최근 몇개월간 북한에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58명에 관해 국제 사면위가 편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이중 대부분이 양심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 명단이 밝혀진 이들중 일부는 수용소에서 사망했을지도 모르며 다른 사람들은 30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들중 일부는 1990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나머지는 10여년 이상 동안 전혀 소식이 없다.

국제 사면위가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에 관한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 대답이 없다. 국제사면위는 이 문서에 나타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의 운명에 관해 보고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새로이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의 은폐주의의 국가이다. 북한의 형법은 북한 당국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중의 일부는 북한

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국제사면위의 제안은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별적인 사례와 일반적인 인권에 관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 달라는 국제사면위의 요청에 대해서도 대꾸하지 않고 있다.

1993년 10월 국제사면위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북한 : 국제사면위의 관심요약, AI INDEX ASA 24/03/93)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정치범 구금의 상태, 열악한 대우, 사형, 헌법 및 법률상의 보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993년 10월 (AI INDEX ASA 24/04/93) 국제사면위가 역시 발간한 바 있는 북한당국이 보낸 4페이지의 회신에서 그들은 사형에 관한 국제사면위의 정보의 정확성은 인정하였으나 법률적 문제 및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여간 북한 당국은 정치범의 구금과 구금의 상태에 관한 국제사면위의 관심에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4년 상반기 국제사면위에 보낸 서한에서 국제사면위가 10월에 거명한 사람들중 두명은 죄수들이지만 북한 당국이 밝힌 것외에 어떤 다른 독자적인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보도된 죄수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부인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개별적 사례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침묵은 국제사면위로 하여금 많은 정치범들이 극히 가혹한 상태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정치범의 친척들이 종종 함께 구금되거나 연금상태에 있으며, 또는 오지로 추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현재까지는 이러한 보고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방과 법적지위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에 대한 사정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의 경우 >

조호평은 1936년 일본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했다. 그는 일본 토호쿠 대학을 졸업한 후인 1954년 코이데 히데코와 결혼하였다. 1962년 2월 11일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는 북한에 정착할 생각으로 그곳에 갔다. 그가 북한에서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는 한반도의 동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인 함흥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심리학 강사가 되었다 한다.

1960년대 중반에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당국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1967년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재교육”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그의 친척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함경남도에 있는 한 과수원으로 보내져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이데 히데코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1973년 그녀는 5년동안 소식이 끊긴후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1963년에 낳은 아들과

1965년과 1966년에 낳은 두딸 등 세자녀와 함께 홀몸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후로는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일본에 있는 조호평의 가족은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를 만나보려고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방문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1983년의 경우 한번 허가가 나왔으나 그후 취소되었다.

조호평과 코이데 히데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 관리들은 일본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행방에 관해 수 없이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조호평이 구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종” 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김덕환의 경우 >

북한의 한 엔지니어인 김덕환은 1966년 러시아에 있는 그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그는 북한 당국이 명백히 그를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금상태후 “실종” 되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인인 그의 부인이 근 30년동안 그를 추적해 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침묵 일관으로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김덕환은 1935년 함경남도(당시는 일본 식민지, 현재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1955년 그는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소련에 있는 PsKov에 파견되었다. 그곳에 체재하는 동안 그는 발렌티나 쿠라쇼바라는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는 1957년 PsKov 건설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북한으로 돌아왔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와는 1958년 5월 북한에서 합류했고 1959년에 아들을 낳았다.

1960년을 시점으로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는 소련과 중국과의 이념논쟁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에 의하면 이념 갈등으로 야기된 긴장은 북한에 거주하는 소련국적의 사람들을 의심하고 박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다. 그래서 발렌티나 쿠라쇼바는 1961년 6월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PsKov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덕환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발렌티나 쿠라쇼바의 의하면 북한 당국은 김덕환에게 그녀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다(동구 또는 소련인의 배우자를 가진 많은 북한인들 역시 이같은 요구를 받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녀는 그가 1961년말 또는 1962년초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게 된 이유는 그가 그녀와의 이혼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김덕환의 수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명백하지 않는 바 그가 어떤 범죄나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후 5년동안 김은 PsKov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병이 들었으며 때때로 배고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억류된 장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평안남도 신양군에 있었다. 발렌티나 쿠르쇼바는 그의 병이 활동성 방사선물질을 다룬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확인될 수 없다. 그는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소련에서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그녀와 이혼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1966년이었다.

김덕환은 만일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양심수이다. 국제사면위는 그가 수감된 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배경과 사생활 때문이며 그는 노동당이 이끄는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취한 결정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김덕환의 행방을 공개하고 1960년대에 그를 구금한 이유를 적시해 줄 것과 그의 소식을 알려달라는 발렌티나 쿠라쇼바의 계속된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 1990년 승호마을에 구금된 정치범 >

국제사면위는 평양에서 70km가량 떨어진 승호마을에 있는 수용소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는 바 그곳에서는 1990년말 현재 최소한 49명의 정치범들이 장기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아래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이 1990년 이후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도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승호마을의 수용소 상태는 감방에 조명은 거의 없고 난방은 전혀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호에 구금된 정치범 중 한사람이 간수에게 맞아 죽은 일이 적어도 한건은 있다. 1990년 이 수용소에는 전 고위관료, 전 재일동포 등과 같은 수십명의 “특별” 정치범은 물론 뚜렷한 개인적 배경이 전혀 없는 “보통” 정치범 등 수백명(600명 가량)을 수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소식통이 전해준 승호수용소의 약도는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범들은 1990년말 즈음 승호마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구금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들중 일부는 간첩행위로 다른 나머지는 반국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재일동포 출신들이다. 일본에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1958년 이후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 식민지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중 93,000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한다.

그들중 대부분은 1960년대 중반이후 전혀 소식이 없으며 일본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은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북한지역

내의 오지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아직도 양심수로서 구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육체적인 제한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표는 1990년 승호에 구금되어 있는 49명의 정치범 명단이다. 국제사면위는 1990년 이후의 그들의 행방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기구는 북한 당국에게 그들의 현재 행방, 승호에 구금된 이유,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들 친척들의 행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번호	이름	출신 (전직)
1	안 암 준	재일동포
2	안 흥 갑	재일동포
3	안 이 준	재일동포
4	조 북 애	한국전 참전
5	조 병 옥	남한
6	조 종 갑	재일동포
7	최 경 식	미상
8	정 정 도	남한
9	정 우 택	재일동포
10	강 대 용	재일동포

번호	이름	출신 (전직)
11	강정숙	남한
12	강수호	재일동포
13	강용수	재일동포
14	김보겸	남한
15	김병현	재일동포
16	김천해	재일동포
17	김인봉	전 북한무역부 담당자
18	김진호	재일동포
19	김종호	북한군 동해안지구 부사령관
20	김상일	북한 무역부 참사관
21	김용길	재일동포
22	고대기	재일동포
23	고상문	남한
24	곽철(곽종구)	재일동포
25	권봉학	재일동포
26	이치수	남한
27	이대철	재일동포
28	이동호	제3행정처(방첩부) 부처장
29	이재용	한국전중 정치위원
30	이재용	북한(상기이름과 무관, 직업미상)
31	이장수	남한

번호	이 름	출 신 (전 직)
32	이 준 광	남한
33	이 나 영	북한 역사학자, 저서 “청년과 혁명”, 1960년이후 소식 단절
34	민 용 일	재일동포
35	윤 회 장	제3행정처(방첩부) 부처장
36	오현(김시택)	재일동포
37	박 창 섭	한국전 참전
38	박 무	재일동포
39	박 은 철	재일동포
40	로 준 우	남한
41	유 성 근	남한
42	서 용 칠	재일동포
43	신 재 화	재일동포
44	신 목	재일동포
45	손 재 석	재일동포
46	송 귀 익	재일동포
47	송 관 호	재일동포
48	염 길 송	북한 무역부 감독관
49	염 기 환	남한

< 기타 알려진 정치범들 >

1992년 5월 국제사면위는 다음의 정치범들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얻으려 하였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한경지 : 전 외국문출판사 비서, 이 여자는 1967년 간첩협의로 구속되어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 익 : 소련출신의 북한인으로 전 조선노동당 고급학교장. 그는 1950년대말 그 지위에서 축출되어 노동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용수 : 소련출신의 북한인으로 전 언론국 국장, 이 여자는 1950년대말 그 직위에서 축출된 후 노동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기석 : 전 경공업부 부장, 그는 1953년 8월 그의 지위에서 축출된 후 구속되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장식 : 전 외교부 부부장,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 비서, 그는 1975년 10월 공직에서 사라졌으며 간첩협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순달 : 전 노동당중앙위 연락부 부부장. 그는 1952년 10월에 서 12월사이에 간첩협의로 구속되어 1953년 6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이들중 일부는 양심수이거나 또는 양심수이었을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위에 이름이 제시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행방 및 적절하다면 그들의 구금 또는 형편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밝혀 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1990년 승호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1991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며 아마도 승호수용소는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미확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첨부]

미국무부 인권 보고서('93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은 조선로동당(KWP)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 노동당은 국가주석이자 총비서인 김일성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46년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일성은 정부와 조선인민군의 통제권을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차츰 이양해 오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의 제2인자이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조선인민의 개인적 숭배의 대상이다. 북한정권은 억압적인 통제로 주민을 지배한다.

북한정권은 주민에 대해 각각 등급을 분류하여 이에 따라 고용, 학교, 의료시설, 상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로동당에의 입당도 제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체제는 최근 몇년사이에 해이해진 듯하다.

북한지도부는 개인적 권리(인권)를 국가나 당의 목표를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중요한 경제적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감독받는 노동활동만이 허락되어 있다. 북한경제는 구소련과의 무역 원조의 중단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발전은 분배편중, 비생산적 자원배분, 부채상환 불능으로 인한 낮은 국제적 신뢰도, 국민 총생산의 25%인 군사비 지출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

'93년도에 간헐적으로 몇몇 도시에서 식량부족으로 야기되는 소규모의 시민봉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듯 식량도 '93년에 다시 수입되었다.

국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식량, 옷, 에너지의 배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실토했으나, 올 농사도 대풍이라고 주장됐다.

북한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계속 부정한다. 2년전과 달리, UN과 관련한 회의 참가 이외에는 미국방문을 허락 받은 북한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도 계속 허락되었으나 그 숫자는 과거 2년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 들었다.

게다가 '91년 12월에 합의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그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92년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93년에 동 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못했고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

북한형법은 국가나 당에 대한 변질, 중상, 불온문서의 소지 등 광범위한 반혁명적 범죄에 대해 모든 재산의 몰수나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독립적 언론이나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에 의해 허가된 매체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없다.

< 북한 분야별 인권실태 >

1.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조망

a. 정치적·초법적 사형

정치범, 김일성·김정일에 반대하는자, 송환된 망명자 등은 즉결로 사형에 처해 왔다. 북한형법 제52조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 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한 행위"는 사형에 처해지며, "사상범", "반혁명적 범죄자" 등도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b. 실 종

북한지역에서의 실종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는 없지만 남한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들의 북한에 의한 납치에 관한 보고는 있다. 일본언론은 20여명의 일본인이 납치되어 북한에 감금되어 있다고 보도 한다. 북한은 물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93년 보고서는 일본 시바다 가족의 실종에 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시바다씨와 그의 아내 신성숙은 '60년에 일본에서 북송되어 북한에 정착했다. '65년에 시바다씨는 간첩협의를 받고 수감되었다. 전에 같이 수감된 사람에 따르면, 그는 건강이 매우 안좋으며, '65년 이후 그의 아내와 세딸들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명세씨의 경우도 '92년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이래 북한에 있는 아내와 딸, 친지들에 대해 어떤 소식도 받지 못했다.

c.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처벌

이런 것에 대한 최근 정보는 없지만, 믿을만한 보도에 의하면 '80년대동안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고, 많은 수형자는 고문, 질병, 기아 등으로 숨졌다.

사형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모인 앞에서 행해져 왔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 어린이, 노동자 등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도 행해졌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수감되며, 어려운 조건하에 벌목작업, 작물수확 등과 같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일반적인 처벌이라 한다.

북한 수용소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사와 사형은 일반적이라 한다. 수용소에서 옷은 3년에 단 한번 지급되었다. 수감자들에게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뛰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발목에 족쇄를 만들어 채웠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수감규칙을 어겼을 경우, 너무 낮아 바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좁아 눕는 것도 힘든 『형벌방』이 있어 여기에 수감자를 몇주간 가두어 두기도 한다고 한다.

d. 자의적 체포 · 구금 · 추방

북한의 형사재판 과정과 집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북한 법체계에 관한 외부적 견해(관찰)도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고 2개월이다. 그러나 이 기간도 무제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 가족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수감자에 취해진 처벌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속적불심사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귀순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약 15만여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외딴곳에 격리하여 수감하고 있다 한다. '92년 10월 두명의 과거 수감자들은 소위 『강제수용소』라 불리는 곳의 혹독한 생활조건에 대해 언급했다.

'92년 여름에 러시아 해안지방에 위치한 북한 벌목장을 러시아 관리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일본 NHK TV기자가 그런 수용소의 가혹한 생활환경을 필립에 담았다.

그러나 북한관리는 그러한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단지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한 『교육센터』의 존재를 인정한다.

한 믿을만한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 그러한 집단수용소가 약 12개 정도 있다한다. 몇명의 전고위관리도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수감자에 대한 방문이나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금지된다.

'91년 7월 북한사회안전부 고위간부이었던 북한망명자 조갑제씨는 북한에 두가지 종류의 수용소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수감자가 결코 빠져나올수 없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수감자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조씨는 자기가 아는 수감자 한 사람이 3년 수감후 풀려났다고 했다.

e.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정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독립기관이며, 재판과정은 상세한 절차를 규정한 법에 엄격한 기속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헌법 제138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피고는 변론할 권리가 있다. 또한 법에 규정된 경우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재판이나 개인의 권리개념은 서구에서 이해되는 것과 크게 다르다.

사회안전부는 정치범의 경우 재판없이 그들을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변호사는 정부가 지명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피고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죄를 자백하게 하여 법원을 도우는 일을 한다.

북한은 정치범과 일반범죄를 엄격히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재판을 한다. 북한은 정권을 비방한 자도 정치범으로 취급한다. 과거에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는 것을 불경죄라하여 정치범에 포함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f. 사생활, 가정, 가족 및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모든 인민들은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교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충성을 공고히 하고 국가이념과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각 방면의 사회안전조직은 대중매체에서의 교리를 명백히 하고 학교, 직장, 마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리를 수행한다.

6.25동란때 월남한 친척을 둔 인민은 북한의 정교한 층서체제에서 아직도 『불순분자』로 분류되는 것 같다. 동란이후 거의 1천만 이산가족으로 인해, 이들은 북한인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조갑제씨에 따르면 『불순분자』는 북한주민의 25-30% 정도 될 것이라 했다. 이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최근 좋아졌다고 조씨가 주장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주민은 주거와 사생활의 불가침성을 부여받고 있다” 는 헌법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는 비방자나 불평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밀고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2.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조망

a.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에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하지만, 북한 당국은 정부의 목적에 합치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규범』과 『집단주의적 정신』에 따를 것을 규정한 헌법조항들이 개인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관한 조항보다 우선한다.

북한이 '81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인정하는 표현·결사의 자유권도 북한 당국은 엄격히 제한한다.

주석이나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로동교화형을 받는다. '86년에 탈출한 한 사람에 의하면, 한 과학자는 그의 집에 있는 라디오에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집에서 김일성을 욕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또 다른 경우로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 거주했던 가족중 한사람이 정부를 비방하다 체포되어서 가족전체가 국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들이 『로동교화소』에 있다는 보도가 '92년에 있었다.

북한은 국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 일본 언론인의 출입은 엄격히 관리된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러시아 언론은 접근이 제한되어 왔고, '91년 한해동안 그들 사무소의 상당수가 폐쇄되었다.

국내언론 검열은 엄격하며, 공식적인 정부시책으로부터의 이탈은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정치관료를 제외하고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라디오와 TV는 오직 국내방송만 수신할 수 있게 고정되어 있다. 정부는 예술적·학술적 활동을 통제한다. 연극, 영화, 오페라, 서적의 주요기능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품성을 찬양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b.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의 허가없이 대중집회를 열 수 없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정부는 이웃간 모임,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단으로써, 유일하게 존재한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에 “인민은 종교의 자유,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이익에 공헌하는 것외에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엄격히 제한한다. 최근에 북한정부는 외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 조직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

북한은 500여곳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보는 1만여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며, 한국 토착종교운동에서 비롯된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인 천도교 청우당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활동이 허락되는 몇몇 절들도 있고, '88말에 세워진 2개의 기독교 교회(케토릭, 신교 하나씩)도 있다.

어떤 북한 방문자들은 교회예배와 신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각색된 의도적 행위라 말하기도 한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그의 주체사상은 숭배된다. 김일성 가족에 대한 찬양은 국가적 종교의 것에 가깝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주의”(북한 언론이 부르는)와 기독교사상을 융합시키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

d. 거주이전의 자유(국내외 여행, 이민, 귀환)

북한당국은 국내여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기 마을을 벗어날 경우 통행증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 통행증은 공무상 여행이나 친척의 결혼, 장례참석을 위한 여행의 경우에만 교부된다.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이런 제한된 목적을 위해 여행할 권리마저 상실한다.

극히 한정된 엘리트들만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가질수 있다. 정부는 민간비행기, 기차, 버스의 이용과 음식, 연료의 공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평양에 택시는 없고 버스와 궤도전차가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하철이 운행되면 그것을 타거나, 걷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평양교외에 살도록 되어 있고, 걸어서 직장에 출퇴근하며, 지붕없는 트럭에 실려와 특별한 국가사업을 위해 동원되기도 한다.

주로 귀순자들에 의하면, 특히 정치적으로 『불순분자』라고 낙인찍인 자들에 대한 강제이주는 일반적이라고 한다. 수도인 평양에 거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왕래하는 것도 엄격히 통제된다.

해외여행은 공무원, 믿을만한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들에 제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해외이민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53년 이후 북한을 떠난 망명자는 단지 1천여명 정도다. 북한당국은 이들의 가족, 친지들에 대해 박해를 가하고 있다.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된 망명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어떤 경우는 처형도 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오길남씨가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후인 '86년에 그의 부인(신속자)과 두딸이 감금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오길남씨는 그의 가족과 연락할 수가 없었다.

'91년에 처음으로 북한주민 1명이 친척 방문을 위해 미국여행이 허가되었는데, 북한 공무원이 동행했으며, 2주후에 돌아왔다.

북한당국은 학생들이 공산주의 국가나 우호적인 제3세계 국가 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89년 동유럽에서 공부하는 북한학생 6명이 망명했을 때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90년에는 소련이나 동유럽에 나가있는 학생들을 귀환시키기도 했다.

'59년에서 '82년까지 재일동포 93,000명(6,637명의 일본인 부인 포함)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되었다.

이들 일본인 부인들(이들중 1,828명은 일본시민권을 여전히 가졌다)은 2-3년마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북한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들 대부분에 대한 소식도 다시 들을 수 없었다. 이들 북송인과 그들 가족 대부분은 동요계층으로 분류되었고 일반적으로 멸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국외에 알려지자 자발적 북송은 중단되었다.

최근 일본배우자에 대한 대우는 개선된 듯하다. 왜냐하면 일본 친지의 방문으로, 북한에 부족한 경화수입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연간 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동안 북한은 재일, 재미, 재중, 기타 다른나라 해외 동포들의 북한 방문을 차츰 허용해 오고 있다.

'93년중 잠시동안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이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어떤 방문자가 호텔이나 숙소 부근을 잘 알고 자유롭게 다닐수 있을지라도, 방문객은 세밀한 감시를 받으며, 여행지는 대개 제한, 고정된다.

여행자가 아파트, 공공건물, 가게나 이와 유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망 : 그들의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북한주민은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다.

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는 일년에 단지 며칠만 개최하고, 지도자에 의해서 제시된 안건을 단지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 북한은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려고, 조직의 뿌리가 빈약한 몇 개의 소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뿐인 대표권을 가진 단체로써 존재할 따름이다. 그들의 주요목표는 외국을 방문하는 당대표를 통해 정부시책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있는 것 같다.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또는 도·시·군당위원회에 대한 선거가 규칙적으로 실시될 지라도 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선거에서 단지 한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율을 보인다고 한다.

3백만 노동당원(전체인구 2,200만명)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 엘리트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데 힘쓴다.

4. 국제적, 비정부적 차원의 인권침해조사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북한내 어떤조직도 인권상황이나 그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어떤 국제인권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동안 UN인권위원회 회의에 업저버 자격으로 대표를 파견해 왔었다.

'91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자, 외교부·사회안전부 관리들을 한차례 만났을 뿐, 그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면위원회, Asia Watch, 그리고 다른 인권관련기관의 방문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민족, 성, 종교, 무능력,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

여 성

헌법에 “녀성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성은 당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거의 올라갈 수 없다.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한 소규모 공장들을 제외하고 여성은 노동력에 있어서 비례적으로 같이 취급된다.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규범도 여성에 대한 불경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의 정치적 범죄로 해서 가족과 함께 여성도 수감된다 한다.

어 린 이

사회적 규범은 어린이들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무상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양방문자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옷을 잘 입고 적어도 일반인민들 만큼은 먹는것 같다고 한다. 평양에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두개의 놀이동산과 하나의 백화점이 있다.

노동당원, 상이군인, 혁명영웅의 자식들은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정치적 범죄를 행한 부모와 같이 수감될 수 있다 한다.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

북한은 약간의 중국인과 재일교포 일본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대개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보도는 없다. 중국이 북한의 최우선 동맹국이고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차별은 없는 것 같다.

장애인

전통적 사회규범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한다.
상이군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평양시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2-3년 마다 평양에 있는 난장이를 포함한 불구자를 조사하여 교외에 있는 특별한 시설들에 이주시킨다고 한다. 장애자를 위한 법적 강제위임조항은 없다.

6. 노동권

a. 단결권

북한에 정부와 관련없는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로동당은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고려무역조합일반연합』이라 불리는 단일노동조직이 북한에 있는데, 이는 전에 소비에트 통제하의 『세계무역조합연합』에 가입해 있고, 이 조직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고전적인 소비에트 모델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이 생산성 목표, 국가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과 건강,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파업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업저버 지위는 가지고 있다.

b. 단체 조직 · 교섭권

노동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로 협상할 권리가 없다.
임금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배정한다. 직업결정에 있어서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가 업무능력 만큼 중요하다.

공장 · 농장 노동자들은 (공장 · 농장)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c.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사용에 관한 금지가 없으며, 정부는 일상적으로 건설 사업을 위해 군인(징집병)을 동원 사용한다.

“갱생노동”, “로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범에 대한 일반적 처벌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수형자들에게 벌목, 곡물 재배와 같은 강제노동이 일반적이라 한다.

d. 어린이의 최저고용연령

어린이의 최저고용연령에 대해 입수가 가능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교육은 15세까지 보편적이고 필수적이며, 이 규칙은 강제적(의무적)이라 여겨진다.

e. 노동여건

최저임금에 대해 입수가 가능한 자료는 없다. 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최저 생계수준에서 생활하는 데는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교육적, 의료적 필요를 무상으로 충족시켜 주고 단지 명목적인 임대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의 댓가를 나타내는 주요지표가 아니다.

헌법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하지만, 몇몇 보도에 의하면, 생산력증진 캠페인 기간동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2-16 시간씩 일한다고 한다.

[첨부4]

휴전이후 남북·억류자 현황

1. 년도별 남북자 통계

- 휴전이후 현재까지 남북자는 동진호 선원 등 총 438명이며 실제 억류 인원은 429명임. ('94.8 현재 대한적십자사 집계)

구 분		년도	남북인원	비 고
해 상 남 북	어 선	1955	10	1명 사망 3명 사망 2명 간첩으로 침투, 입건 2명 사망 1명 사망
		1957	2	
		1958	23	
		1964	14	
		1965	22	
		1967	45	
		1968	128	
		1969	9	
		1970	17	
		1971	16	
		1972	65	
		1973	6	
		1974	28	
		1987	12	
	해군 I-2정	1970	20	
	소 계		417	실 억류인원 408명
항공 남북	L - 19 KNA KAL	1954	2	
		1958	7	
		1969	12	
		소 계		21
총 계			438	실 억류인원 429명

※ 해상 납북자 417명중 사고인원 9명을 제외하면 명단상의 실
억류인원은 408명이며 항공 납북자를 포함한 전체 억류인원은
429명

※ 납북자 명단 438명 이외에 미확인된 납북자 37명 명단 별도
작성

○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납북인사들을 송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며, '80년 이후에만도 성명, 담화, 대북전통문 등
22회에 걸쳐 이들의 조속 송환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음.

- 가장 최근 촉구한 것은 '94.4.22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
전통문임.

2. 휴전이후 납북·억류자 명단

가. 납북어부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대성호	55. 5. 28	이산음	41	경기 인천	선 장 선 원
		김장현	44	경기 부천	
		황덕식	42	"	
		정태현	41	경기 인천	
		유의택	42	미 상	
		유장화	49	경기 강화	
		윤성우	41	경기 인천	
		김순귀	47	경기 부천	
		조종일	40	미 상	
		박복재	41	경기 인천	
덕길호	57. 11. 9	마승섭	44	강원 고성	
해용호	57. 11. 9	김성주	48	"	
제2신복호	58. 5. 14	장순덕	39	경남 삼천포	
명규호	58. 4. 29	박동근		경기 부천	
		홍복동		"	
신명호	58. 11. 7	송성락	52	강원 고성	
		신광필	37	"	
		송상인	49	강원 고성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금구호	58.11. 7	박동준	49	"	
		허 준	45	"	
		이용택	46	"	
어성호	58.12. 6	김범주	18	"	
		김여훈	50	"	
하영호	58.12. 6	김명은	46	"	선 장
		김윤택	46	"	선 원
		엄광섭	46	"	
금등호	58.12. 6	윤승범	42	"	선 원
		김개락	38	"	
광영호	58.12. 6	김원로	54	"	
평화호	58. 4.29	김영복	21	"	
		박영근	57	경기 김포	
다복호	58. 4.30	김창현	32	경기 인천	조리사
		김명선	47	"	선 원
풍영호	58. 4.30	한진용	30	경기 강화	
신흥호	58. 4.30	박세운	39	전남 고흥	
제2보승호	64. 3. 1	이종윤	40	"	선원, 사망
		송은석	48	"	선 원
		최석용	45	"	
		최준수	42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권오용	35	"	
		곽형수	33	"	
		박대길	35	"	
		임순복	35	"	
		최동길	19	"	
		최문길	22	"	
		곽종호	35	"	
강화호	64. 7. 19	박기정	26	경기 강화	
		한상준	29	"	
부영호	64. 7. 29	문성천	38	경기 인천	
광명호	65. 5. 8	최동기	41	전남 고성	선원, 사망
대영호	65. 5. 31	이정용	22	경기 부천	선 원
승리호	65. 10. 29	나용을	29	"	
		현근화	33	경기 인천	
용북호	65. 10. 29	문정숙	25	경기 강화	
		김분임	61	"	
용미호	65. 10. 29	정영남	38	"	선 원
춘곡호	65. 11. 15	정창구	33	경남 총무	사 망
		천진옥	33	경북 영덕	사 망
명덕호	65. 11. 20	김성만	21	강원 고성	
		이병기	49	"	
		이창영	47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김경수	18		
		김장원	49	강원 고성	
		김정구	19	"	
		한동순	26	"	
		주인복	46	"	
		최영균	48	"	
덕삼호	65. 11. 20	서복래	43	"	
제79대양호	65. 11. 26	김대운	50	강원 속초	
행영호	65. 11. 30	서석민	18	"	
		김종옥	32	강원 고성	
제3용진호	67. 3. 21	이재용	21	강원 속초	70. 3. 19 간첩으로 침투입건
제11천대호	67. 4. 12	최명환	35	부산 영도	선 장
		정학명	37	부산 서구	기관장
		배영식	33	"	갑판장
		진정팔	30	경북 영일	조기장
		최종동	27	경남 거제	조기수
		최효길	29	부산 영도	통신사
		남복희	32	경북 영덕	선 원
		장길용	29	경북 영일	
		김상수	30	경북 창원	선 원
		김영일	29	경남 삼천포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창성호	67. 5. 23	김홍일	30	경남 삼천포	70. 11. 20 간첩으로 침투입건	
		이정식	34	전남 완도		
		김장훈	27	경 북		
		김대곤	28	경북 월성		
		윤경규	18	충남 서산		
		홍순균	17	"		
승용호	67. 5. 28	이성일	17	전남 옥구		
태영호	67. 5. 28	최창의	20	충남 서산		
		김옥준	16	"		
풍북호	67. 6. 5	최원모	48	전북 군산		
		문경식	66	"		
		양용수	33	경남 하동		
제3부성호	67. 6. 15	김봉수	27	경북 울진		
정진호	67. 7. 22	이기출	49	강원 명주		
어성호	67. 11. 3	오원섭	41	강원 고성		
거성호	67. 11. 3	이진영	25	"		
금윤호	67. 11. 3	김자준	48	"		선 장
		박규조	26	"		기관장
		박락선	29	"		선 원
		이태수	34	"		
		장재원	40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해양호	67. 11. 3	이창식	38	강원 고성	선 장 기관장 선 원		
		김성래	39				
		박능출	24	"			
		홍순권	35	"			
		마기덕	19	"			
		김상준	26				
광명호	67. 11. 25	한혜진	40	"	선 장 기관장 선 원		
청진호	67. 12. 20	김남현	27	"			
		이종해	47	"			
		김성호	29	"			
		이춘식	30	"			
		오명복	29	"			
경 호	68. 1. 6	가양덕	29	"	선 장 기관장 선 원		
		김철중	33	강원 명주			
		양상을	42	"			
홍익호	68. 1. 6	박복택	25	강원 양양	선 장 기관장		
		이태용	49	"			
행덕호	68. 1. 11	김흥현	19	강원 고성	선 원		
		이옥진	43	"			
		강명조	19	"			
		이영석	19	"			
		창영호	68. 4. 17	정장백		20	"

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종진호	68. 4. 27	임규철	26	강원 고성	
		정연태	28	"	
		김용봉	20	"	
		윤무출	39	"	
신진호	68. 5. 9	김정일	32	"	
		오성재	38	강원 춘성	
대성호	68. 5. 23	김홍균	24	강원 명주	
		임병혁	26	강원 고성	선 장
		한기돌	15	강원 명주	선 원
춘덕호	68. 5. 29	김재구	22	전남 목포	사 망
성운호	68. 5. 29	박만복	43	강원 고성	선 장
		김명학	47	"	기관장
		이상원	47	"	선 원
		장창수	38	"	
		김수권	39	"	
		공문익	57	경기 부천	사 망
부길호	68. 6. 6	김일오	26	전남 여천	
		박명옥	16	"	
		김길오	35	전남 완도	기관장
영신호	68. 6. 6	고갑봉	30	전남 영암	선 원
		오판철	32	전남 남원	
		김이배	31	전남 진도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덕산호	68. 6. 6	최동진	19	충남 보령	선 장
		서종술	37	경기 부천	
		이선주	27	충남 당진	
		이일남	28	경기 부천	
		고종현	22	"	
풍년호	68. 6. 6	김용길	18	전남 해남	
		전인만	16	강원 고성	
		최동일	38	"	
		김병호	16	"	
		전영욱	14	"	
		신성욱	28	"	
		주재근	28	"	
		고준수	27	"	
		조문호	34	"	
		김용기	28	"	
		박형중	14	"	
		이철기	11	"	
		영신호	68. 6.12	서용식	
김도경	23			전남 목포	
해양호	68. 6.16	김광운	36	경기 부천	
취영호	68. 6.17	손운주	22	"	
		손철순	20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제6북정호	68. 6. 17	김광근	25	경기 부천	
		홍상표	21	경기 강화	
		김영구	21	"	
제2성북호	68. 6. 21	유병춘	31	경기 인천	
		심광식	28	전북 군산	
		김창현	45	"	
경흥호	68. 6. 23	이일환	41	경기 시흥	
		오남문	30	서울 성북	
		이기준	28	경기 인천	
경북호	68. 6. 29	김진경	38	"	
		차종식	22	"	
		김대만	25	전남 광주	
금용호	68. 7. 2	이상은	22	경기 강화	
		김용수	16	강원 고성	
		윤두찬	40	전북 옥구	
		김남호	19	강원 고성	
		함태천	30	"	
		윤능산	18	"	
		고종환	17	"	
		김명희	15	"	
		주영삼	17	"	
은 권	42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신양호	68. 7. 2	황두호	19	강원 고성	선 원
		장 면	14	"	
		곽도상	18	"	
		김용권	19	"	
		박성문	24	"	
창명호	68. 7. 2	이춘만	31	"	선 장 선 원
		조규영	13	"	
		김철규	14	"	
		이종범	47	"	
제17백구호	68. 7. 4	이영철	28	전남 신암	선 원
		윤규선	24	전남 진도	
태양호	68. 7.10	조석원	15	강원 고성	
		김진영	49	"	
만복호	68. 7.10	강진구	55	"	
		최원수	18	"	
		강봉운	64	"	
		최승복	14	"	
		박홍식	17	"	
가덕호	68. 7.10	전석구	42	"	
		이해주	34	충북 충주	
		박종업	55	강원 고성	
		김상윤	37	충북 충주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덕성호	68. 7. 12	김남철	24	전남 진도			
		이양진	29	경기 인천			
		김춘식	29	전남 무안			
		여인억	47	경기 인천			
제1대북호	68. 8. 6	김재욱	47	강원 고성			
		황명삼	26	"			
		한택선	40	"			
제2덕수호	68. 8. 7	장을선	50	강원 속초		선 원	
		정한수	38	"			
		김광수	25	강원 고성			
		강명화	25	"			
		김석철	17	"			
		엄기만	14	"			
		강중기	29	"			
		용명호	68. 10. 30	함기남	47		"
		기성호	68. 10. 30	서수중	28		강원 속초
		해진호	68. 10. 30	김종우	27		"
영창호	68. 10. 30	임재동	28	강원 고성	선 원		
		진기범	29	강원 강능			
		김이득	22	경북 영일			
어재호	68. 10. 30	전만수	28	강원 고성	선 장		
양진호	68. 11. 7	이영기	22	강원 명주	선 원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고순철	29	강원 명주	
동일호	68.11. 7	이태운	25	경북 영덕	
해승호	68.11. 7	김동주	22	강원 명주	
준 호	68.11. 7	문원호	46	"	기관장
원일호	68.11. 7	이기석	26	경북 영덕	선 원
영덕호	68.11. 8	안수선	26	강원 고성	기관장
수진호	68.11. 8	정연배	42	"	선 원
		전도민	50	"	
풍성호	68.11. 8	김종순	49	"	
제2신흥호	69. 5. 1	한종남	20	전남 진도	
흥덕호	69. 5. 5	이광원	19	전남 무안	
복순호	69. 6.10	임판길	31	충남 서천	
		정홍해	27	충남 보령	
		이동수	27	충남 서천	
신성호	69. 6.10	이덕표	41	전북 옥구	선 장
		최두수	34	전남 해남	기관장
		정순길	33	전북 옥구	선 원
		전문석	38	전북 부안	
제21봉산호	70. 4.29	김태광	27	전남 완도	
		강병일	30	경기 인천	
		최종을	19	전남 강진	
		김영철	16	전남 진도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제22봉산호	70. 4. 29	박휘도	23	경북 포항	
		이재근	33	경남 울산	
		황석균	31	충남 서산	
금강산호	70. 6. 22	권혁근	36	강원 삼척	
		오관수	30	전남 광산	
		김홍농	20	"	
		이순봉	30	경북 울진	
제7남일호	70. 6. 30	김일영	36	경남 남해	
제1만복호	70. 7. 8	사명남	31	경기 용진	
제2만복호	70. 7. 8	최상일	36	"	
무진호	70. 7. 8	민경선	33	"	선 장
		변호신	33	"	기관장
		장춘빈	47	"	선 주
창동호	71. 5. 14	김재수	27	강원 속초	선 장
제37휘영호	71. 6. 6	박찬향	43	경남 남해	기관장
		장세율	49	경남 거제	선 원
		박길윤	26	경남 남해	
		송옥천	30	"	
		박동순	39	"	
		정목살이	29	"	
		황영식	51	"	선 원
		김상대	29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해황호	71. 12. 25	전완상	20	경남 거제	선 장 선 원 선 원 선 원 기관장 선 원
		김인천	26	경기 용진	
		박정구	35	전북 군산	
		김창덕	20	경남 거제	
		김봉식	32	경남 충무	
		황영천	26	경기 가평	
제36안영호	72. 2. 4	강흥기	39	전남 여천	
		이홍섭	31	경남 남해	
		박복만	38	경남 통영	
		박상국	27	"	
		김두선	34	경남 남해	
		공순경	41	"	
		김일봉	22	"	
		김임권	30	"	
		김휘남	29	전남 완도	
		동정순	18	경남 남해	
		배현호	22	"	
		김동식	37	부산 영도	
		김석안	25	전남 보성	
		김주홍	58	부산 영도	
제35안영호	72. 2. 4	이평일	44	전남 여천	
		위춘환	37	전남 완도	
					선 장 기관장 선 원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김철주	40	경남 남해	선 원
		김소웅	29	부산 영도	
		이상록	20	부산진구	
		정태갑	33	경남 남해	
		정동배	19	부산 서구	
		박달모	23	경남 남해	
		전승철	23	부산진구	
		박장현	21	전남 여천	
		신태용	28	전남 보성	
		최부영	20	경남 남해	
		김달영	36	전남 완도	
제11금해호	72. 5. 3	강여진	26	경기 용진	
		김종덕	20		
제2해영호	72. 5. 12	김순식	16	강원 주문시	선 장 기관장 선 원
유풍호	72. 6. 9	배민호	49	강원 속초	
		김정길	32	"	
		이수석	34	"	
		강승도	37	"	
		남무수	32	"	
		남정열	39	"	
		최성현	44	"	
		임창규	19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금성3호	72. 8. 14	이원재	34	강원 속초			
		김영식	19	강원 고성			
		송래규	21	경남 남해			
제6일진호	72. 8. 21	김대봉	33	경북 영일	선 장		
제61오대양호	72. 12. 28	유경춘	45	경남 거제	기관장		
		박영석	34	"	선 원		
		박용갑	32	경남 남해			
		이공희	20	서울 영등포			
		이재명	34	경남 거제			
		김종원	46	부산 영도	선 원		
		박영종	22	경남 거제			
		최영근	49	"			
		김의준	25	"			
		김일만	17	"			
		박덕술	16	"			
		김용철	45	경기 수원			
		제62오대양호	72. 12. 28	박두남	38	경남 거제	선 장
				서영구	38	부산 영도	기관장
				강소동	29	경남 거제	선 원
박두현	35			"			
정형래	20			"			
		정도평	26	"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제1신진호	73. 7.27	정건목	20	경남 남해	선 장 기관장 선 원
		김천주	39	경남 거제	
		김태준	17	"	
		김옥을	17	"	
		서석기	32	"	
		안수영	27	전북 김제	
		나기용	52	경기 용진	
		조순래	31	경남 김해	
		조인우	17	경기 용진	
		김영화	46	"	
		김순남	24	"	
수원32호	74. 2.15	서덕수	37	"	선 장 기관장 선 원 선 원
		김생림	48	부산 영도	
		송민경	52	경남 남해	
		김근식	18	전남 진도	
		이대홍	19	경남 남해	
		김월근	25	경기 인천	
		김용기	33	전남 진도	
		유용덕	21	전북 완주	
		안병진	27	경북 성주	
		이천석	27	경기 인천	
		박광원	30	전남 진도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수원33호	74. 2. 15	김종관	22	전남 해남	선 장 기관장 선 원
		이성용	27	전남 영암	
		정유석	29	전남 고흥	
		김용길	17	전남 완도	
		박종계	43	부산 영도	
		임대환	43	경기 인천	
		박남주	34	전남 진도	
		김중식	25	경기 인천	
		김현남	23	전남 진도	
		김용권	25	경북 군위	
		최복열	31	전남 진도	
		정종윤	36	"	
		백홍선	26	전남 장흥	
		김재봉	20	전남 진도	
		최영철	17	충남 청양	
		장영환	25	경기 인천	
고광의	33	부산 영도			
기노석	17	전남 무안			
제27동진호	87. 1. 15	김순근	45	전남 여수	선 장 기관장 선 원
		김상섭	36	"	
		강희근	36	인천 남구	
		추영수	56	인천 동구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진영오	27	경남 김해	
		노성호	26	인천 중구	
		박광현	38	서울 구로	
		양용식	28	인천 북구	
		임국재	33	인천 동구	
		김영현	23	인천 중구	
		정일남	31	전남 고흥	
		최종석	41	서울 성동	어로장
계		397명			

나. 해군 I-2정 승무원

선박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생년	주 소	비 고
해군 I-2정	70. 6. 5	문석영	46	서울 용산	소 위
		정수일	29	서울 중구	준 위
		임성우	33	경기 인천	상 사
		김기강	35	강원 원성	중 사
		조태봉	34	경기 인천	"
		도종무	47	"	"
		맹길수	45	전남 해남	"
		함영주	46	서울 용산	"
		이덕주	40	경기 인천	"
		신영훈	46	서울 중구	하 사
		권덕찬	47	"	"
		김태종	47	경기 평택	"
		박재성	46	경남 밀양	"
		김해열	49	경북 청도	"
		정원석	46	부산 서구	"
		이재영	47	전북 정읍	"
		최용호	44	"	하 사
		조진오	46	부산 동래	"
		정광모	47	경기 인천	병 장
		서금성	48	"	상 병
계		20명			

다. 항공납북자

항공기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L - 19	54.10. 1	정성진		부산 동구	중 위
		한상의			"
KNA	58. 2.16	김현숙	35	경북 대구	상 업
		김미숙	22	"	무 직
		최관호		"	군 인
		김택선		"	상 업
		김수희		"	무 직
		김길선		"	학 생
		김순기		경기 인천	
KAL	69.12.11	유병화	42	서울 용산	조종사
		최석만	42	서울 성북	부조종사
		정경숙	28	서울 영등포	스튜어디스
		성경희	28	서울 성북	"
		황 원	38	강원 강릉	아나운서
		김봉주	33	"	기 자
		채헌덕	43	"	병원장
		장기영	48	경기 의정부	요식업
		임철수	55	강원 양구	회사원
		이동기	53	경남 밀양	합동인쇄소

항공기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주 소	비 고
		최정웅	32	강원 원주	한국스레트
		조옥희 (납치범)	48	경기 평택	민주언론사
계		21명			

- * KNA : 승객 30명, 승무원 3명을 태운 부산발 서울행 대한국민항공사 (KNA) 여객기를 평택 상공에서 간첩 5명에 의해 납북, 외국인을 고려 일부 승객 송환, 기체와 승객 8명 계속 억류(1명 명단 미확인)
- * KAL : 승객 47명, 승무원 4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YS-11 여객기를 간첩 조옥희가 납치, 승객 39명은 납치 66일만에 송환, 승객·승무원 12명 계속 억류

라. 미확인 납북자 명단

어 선 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비 고
북진호	63. 1.18	한우근	32	
봉길호	63. 9.20	조석구	20	
부영호	64. 7.29	김동우	25	
신성 2호	64.10.16	김광호	23	
		원영일	47	
		유한복	20	
광명호	64.10.28	박용성	27	
길용호	65. 2. 2	이수태	30	
길용호	66. 1. 7	남정석	38	
길영호	66. 1.22	양효근	41	
영종호	66. 1.26	황창섭	55	
길영호	66. 6.24	정복식	23	
대성호	66. 6.24	박팔만	18	입원
제11천대호	67. 4.12	최종등	26	
제7갱상호	67. 5.23	최용철	33	
안홍호	67. 5.24	황정순	30	
순덕호	67. 6.25	양석주	44	
정진호	67. 7.22	정재규	24	
무동력선	67. 8. 5	배승윤	38	
해양호	67.11. 3	최원철	36	

어 선 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연령	비 고
신 창 호	68. 1. 6	탁 재 룡	27	
제35안영호	68. 1. 9	김 주 철	30	
창 영 호	68. 4. 17	김 학 래	27	
		박 태 용	51	
제17백구호	68. 7. 4	윤 귀 남	21	
풍 성 호	68. 11. 8	정 재 열	31	
		정 연 배		
제2신흥호	69. 5. 1	안 만 학	43	
동 진 호	72. 1. 10	김 정 옥	27	
제35안영호	72. 2. 4	김 충 덕	17	
유 풍 호	72. 6. 2	김 석 송	55	
제6일진호	72. 8. 21	이 석 용	31	
제61오대양호	72. 12. 28	김 욱 표	28	
		박 두 현	35	
천 광 호	75. 8. 8	박 양 수	14	
		김 두 익	45	
동 영 호	77. 5. 10	최 장 근	36	
계		37명		

북한의 인권실태

발행처 통일원 정보분석실 ☎ 720-21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인쇄처 진명인쇄공사

인쇄일 1994년 8월 12일

발행일 1994년 8월 15일

통분 94-8-30